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

최유경 · 정아름

E.S.G. Disclosure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연구책임자 :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hoe, Yukyong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Jung, A-reum

2021. 07.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연 구 진

연구책임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책임(원외)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원내 심의위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원외 심의위원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감리위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부 자문위원	김정욱	KDI	선임연구위원, 규제연구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조교수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
연구보조원	손연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백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박소희	사회적가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E.S.G. 담론의 전세계적 확산

- 2020년 촉발된 COVID-19 확산을 계기로 세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해 비재무적 성과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
 - E.S.G.란, 투자 및 주요 경영전략으로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적 요소 이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함.
 - 기업의 E.S.G.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비재무성과에도 기업의 성과와 전략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의 개념은 사회적 가치 개념만큼이나 ‘형성 중’에 있는 개념으로서 의무화 또는 법제화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 존재
-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 법제화 논의가 존재했고, 향후 사회적 가치와 E.S.G.의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큼.
 -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일환으로 E.S.G. 담론을 연계하여 논의하되, 특히 E.S.G. 공시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법제화 전망을 시도

▶ 국내외 E.S.G. 공시 의무 가속화

- 한국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강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과 2030년을 각각 목표로 설정하여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
 - 곧이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를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E.S.G. 평가 지표 또는 공시제도와 절차에 관한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E.S.G. 공시의무 제도화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의 운영과 효과 창출 못지않게, 정부, 기업, 투자자와 소비자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해외에는 EU를 중심으로 이미 2014년과 2019년 E.S.G.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의무를 법제화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과 EU 회원국 내에서의 국내적 수용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미국에서도 E.S.G. 관련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 215-214로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를 통과시켜 그 내용과 효력, 향후 영향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임.

II. 주요 내용

▶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

-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서 공개되는 비재무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최소한 환경 문제, 사회 및 고용 관련 문제,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문제 등에 이르는 비재무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결정

- 2014년도 지침은 기존의 유럽의 회계지침인 Directive 2013/34/EU(이하 2013 EU 회계지침)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아 비재무정보 역시 공시(公示) 되도록 그 내용을 추가
- 특히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은 제1조 (NFRD Article 1)에서 2013 EU 회계 지침 상의 제19a조 및 제 29a조를 신설하고, 동 지침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8조를 개정하여 이른바 비재무정보 공시(公示)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E.S.G. 관련 공시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하여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EU 회원국들은 해당 지침의 국내법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는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E.S.G. 관련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 특히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위에서 설명한 국가들에 비하여 좀 더 엄격한 국내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 강화된 E.S.G.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

▶ **2019년 EU 금융서비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2019/2088/EU)**

- EU 회계지침과 그 수정 지침은, 2019년에 이르러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로까지 확대
- 즉 EU는 지속가능한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시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SDGs에 맞추어 저탄소의,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효율적인 순환 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유럽연합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 모색

- 특히 투자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보험 자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통합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의무(제3조), ‘계약 전 공시’를 통해 지속가능성 위험이 투자 결정에 통합되는 방식, 이러한 위험이 금융상품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설명하도록(제6조) 함.

▶ 미국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미국은 E.S.G. 제도화 측면에서는 유럽과 달리 정부가 법의 제정 등을 통해 특별히 이를 강제하기보다 의식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담론을 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가이드라인(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을 발표한 바 있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공시 요구 강화 필요성을 언급
 - 특히 미국 SEC는 2009년, 다양성에 관한 공시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 COVID-19 전후로 인종(race)와 젠더(gender)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급진전
 - 한편 2009년 SEC 공시규정에는 지배구조(G) 등을 포함
- SEC는 이미 기업으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공시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2021년 3월 무렵부터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의 법제화 관련 논의를 본격화
 -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 215-214로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가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효력, 향후 영향 등에 주목할 필요

▶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정보를 자율공시 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평가기관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기업들의 E.S.G. 점수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E.S.G.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으로 자율공시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 및 매출액이 큰 기업이 주로 공시
 - 기업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 및 기준이 상이하나, 대표적으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SASB와 TCFD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84%가 외부검증을 받고 있으며, AA1000 Assurance Standard 검증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
- 국내에서는 크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세 기관에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다소 차이가 존재
 - 최근들어 E.S.G. 평가 결과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의 일치도는 크게 높지 않음.

▶ **국내에서도 해외와 동일하게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
 -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통해 정보공개의 필요성, 작성원칙 등을 발표
 - 다만, 가이드스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향후 주요 관련 입법 동향을 살필 필요

▶ E.S.G. 정보 공시의무 제도화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 이처럼 국내에서도 올해 초부터 E.S.G. 공시의무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검토해야 할 쟁점이 존재
 - 제21대 국회에는 약 50여 개의 관련 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E.S.G. 관련 지표의 마련, 후속적인 제도화 방안을 각 부처별로 마련하는 모양새이나 이는 시장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화를 위한 통합적 논의 필요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경우, 가급적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통해 E.S.G. 추구를 독려하되 가급적 기업의 자율공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
 - E.S.G. 정보공시 의무화 또는 법제화에 대해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은 시장을 기반하여 자발적인 공시가 효과적이라는 입장
 - 대체로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공시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 작성, 공개하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미 국내 기업들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공시 의무와 환경정보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공시를 위한 비용과 내용 작성 등에 관한 부담도 고려할 필요
 - 나아가 공시 과정과 절차, 내용과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세부적인 논의 필요

Ⅲ. 기대효과

▶ 해외 E.S.G. 공시 의무의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각 국가별 입법 동향의 이해 및 시사점 도출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S.G. 공시 의무 제도화 관련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 쟁점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E.S.G. 공시 의무 제도화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 시사점 도출

▶ 국내 E.S.G. 공시 의무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주체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화 기반 마련

- 금융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E.S.G. 관련 국내 정책 및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 도출
 - 향후 E.S.G. 공시 의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해당 정보의 표지를 확정하는 한편 정보의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균형성, 검증가능성 및 적시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 등 도출
 - 정부,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등 향후 제도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주제어 : 사회적 가치, E.S.G., 공시, EU 회계지침,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Global Expansion of the E.S.G. Discourse

- With the spread of COVID-19 that exacerbated in 2020, the world began to pay full attention to non-financial achievements such as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to main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 E.S.G. refers to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s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other financial factors, primarily from an investor's point of view as an investment and key management strategy.
 - Emphasizing corporate E.S.G. realization is equivalent to 'sustainable invest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t may be interpreted as a willingness to associate a corporation's performance and strategy with non-financial factors as a way to establish investment criteria for assessment.
 - Nevertheless, the concept of E.S.G. is 'in the process of being formed' like the concept of social value, meaning that its external properties are still quite ambiguous and indeterminate to be used as a requirement or a basis of a legislation.

○ In S. Korea, many discussions led by public institutions already took place to legislate social values.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s and E.S.G.

- This study seeks to bring in the E.S.G. discourse as part of the efforts to legislate social values, introdu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related to the E.S.G. disclosure, and envisage its legislative prospects.

▶ Acceler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fforts to Require E.S.G. Disclosure

○ On January 14, 2021, the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FSC) announced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responsible investment. It also implied that targets would be set for 2026 and 2030 for corporations of a specific size or larger to enhance the E.S.G. disclosure requirements.

- However, the KRSC's 『E.S.G. Information Disclosure Guidance』 fails to sufficiently consider the systemic implications of specific E.S.G. evaluation indicators,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dures, etc.
- For prope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transparent, objective,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as well as the viewpoints and posi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corporations, investors, and consumers, etc.

- Primarily through the EU, other jurisdictions already legislated the E.S.G.-related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in 2014 and 2019.
- A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key legislative contents and the specific ways the domestic translation of this requirement happens within the EU member states, clos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ir developments.

II. Main Content

▶ The EU Directive on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2014/95/EU)

-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within Europe, and to increase their comparability, the EU has decided to require large-scale business sites to release information on specific non-financial contents, such as minimal environmental concerns, social and employment-related issues, human rights-related aspects, and anti-corruption and bribery issues.
 - The EU Directive on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Reporting (2014/95/EU, NFRD) added the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requirement to the existing European Accounting Directive 2013/34/EU (henceforth, the 2013 Accounting Directive).
 - In particular, Article 1 of the 2014 Directive amended the EU 2013 Accounting Directive by revising its Articles 20, 33, 34 and 48 and

adding Articles 19a and 29a as a way to include clauses on the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This was the first legislation that established the E.S.G.-related disclosure mechanism.

- The EU member states have adopted this Directive through their domestic legislations. For example,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require the disclosure of E.S.G.-related information for corporations that have over 500 employees, net sales of more than 40 million Euros, or the total asset of 20 million Euros.
-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compared to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several other countries such as Spain, Denmark, and Ireland have established a lot more rigid disclosure systems related to E.S.G., such as implementing more stringent domestic legal standards.

▶ **The EU Regulation on the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2019/2088/EU)**

- Through amendments, the scope of the EU Accounting Directive has been expanded from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o non-financial information.
 - In other words, the EU attempts to minimize information asymmetry by requiring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to make continuous disclosures regarding sustainable investment, and seeks to secure the EU economy's long-term competitiveness by implementing a low-carbon, more sustainable, and resource-efficient circular economy in line with i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For example, it contains the duty to publish written policies on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risks i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and investment or insurance advisory processes (Article3), information in 'pre-contractual disclosures' regarding how sustainability risks are incorporated into investment decisions, and descriptions of the evaluation results on how these risks may impact the returns of the financial products (Article6).

▶ The E.S.G. Disclosure Institutionalization Trends in the US

- Unlike Europe, where the governments take a more forceful approach through the legislative enactments, the US has led or actively pursued the E.S.G. discourse in partnership with conscious corporations, which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effort.
- Nevertheless,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nnounced the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2010 and discuss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disclosure requirements on sustainability in a broader sense.
 - For instance, the SEC announced disclosure rules on diversity in 2009,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triggered societal-level interests in and discussions of race and gender issues around 2020.
 - Meanwhile, the SEC's disclosure rule includes references to governance and other related factors.

- The SEC has already required corporations to disclose financially 'material information.' Since March 2021, a full-fledged discussion to legislate the E.S.G. disclosure requirements with a focus on climate change has begun.
 - The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is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Standing Committee following the vote (215-214)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passed the *Act* in June 2021.

▶ **Diverse Statues and Comments in South Korea over the E.S.G. Disclosure**

- Corporations in S. Korea are voluntarily disclosing their E.S.G. information through their sustainability reports, and evaluation agencies such as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assess the corporations' E.S.G. score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ose corporations.
- Korean corporations - especially those large in size and sales volume - voluntarily disclose E.S.G. information through their 'sustainability reports.'
 - The sustainability reports released by each corporation tend to differ in their contents and standards. Yet, many tend to use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tandard, with an increased demand for SASB and TCFD standards in recent years.
 - Eighty-four percent of the recently published sustainability reports are externally validated, with the AA1000 Assurance Standard being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 for assessment.
- In Korea, E.S.G. evaluations are conducted mainly by the KCGS, Sustaininvest, and the Da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ho uses somewhat different evaluation criteria.

- Recently, the polarization of E.S.G. evaluation results has been observed as there are notable variations in the results reported by different evaluation agencies.

▶ **As with the Global Trend, Conversations Aimed at the Expansion of the Mandatory Disclosure of E.S.G. Have Begun in S. Korea**

- S. Korea is also witnessing efforts to improve E.S.G. information disclosure.
 - On January 14, 202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Korea indicated in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that it would gradually make the E.S.G. disclosure mandatory.
 - As part of its follow-up measures, the Korea Exchange (KE) released the 「E.S.G. Information Disclosure Guidance」 regarding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principles of draft preparation, etc. However, this Guidance does not have legal force, and its contents have been somewhat abstract. Therefore, future legislative trends on this topic need to be separately examined.

▶ **Stakeholder Posi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 Although the conversations aimed at expanding the mandatory E.S.G. disclosure requirements have begun early this year in S. Korea, several issues that require further examination still remain.

- About 50 related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respective Ministries are preparing E.S.G.-related indicators and follow-up measures for institution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Yet,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se efforts since such large-scale changes might cause significant confusion in the market.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Korea Exchange suggested that encouraging the pursuit of E.S.G. through the E.S.G. disclosure guidelines is important, but doing so should be left with corporations to decide on a voluntary basis if possible.
 - Regarding the mandatory or legislated E.S.G. information disclosure, European and American corporations generally maintain that voluntary disclosures are more effective based on the market demands.
 - Most corporations recognize the need for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Yet, a social consensus needs to be reached o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subjects of disclosure, timing, procedure, and methods; as well as the economic burden associated with the collection,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needs to be considered in detail.
- E.S.G. disclosure requirements may overlap with the pre-existing disclosure requirements imposed on corporations in S. Korea, such as the duty to publish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and disclos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matters.

- Lastly, a much more elaborate discussion is needed on the process and procedures of disclosure and how its contents and outcome may be re-verified.

III. Expected Effects

- ▶ Understanding and deriving implications from other jurisdictions' efforts to institutionalize E.S.G.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their specific contents, procedures, and legislative trends
 - This study introduces the latest legislative trends, main contents, and issues relate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S.G. disclosure requirements, which are currently driven by Europe and the US; and draws implications for S. Korea.

- ▶ Layering the foundation for its institutionalization by understanding the main contents of the E.S.G. disclosure requirements and the viewpoints of stakeholders
 - The key points and limitations of E.S.G.-related domestic policies and the "E.S.G. Information Disclosure Guidance" announc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t al. are reviewed, and the significant issues relating to their institutionalization are discussed.
 - Above all, this study helps to ascertain the disclosure index and identify its accuracy, clarity, comparability, balance, verifiability, and timeliness

of the information that need to be confirmed for prope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S.G. disclosure requirements.

- This study helps to layer the foundation for the prospective institutionalization by reflecting the domestic situation based on stakeholder opinion survey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rporate actors.

▶ **Key Words : Social Value, E.S.G., disclosure, EU NFRD, E.S.G.. Information Guidance**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7
1. E.S.G. 담론의 전세계적 확산	27
2. 국내외 E.S.G. 공시 의무의 가속화	30
제2절 필요성과 범위	34
1. 연구 필요성	34
2. 연구 범위	36

제2장 해외 E.S.G. 정보공시 법제화 동향 / 39

제1절 EU의 E.S.G.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효력	41
1. E.S.G. 공시의무의 법제화 연혁	41
2.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	44
3. 2019년 EU 금융서비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2019/2088/EU)	61
제2절 미국의 E.S.G. 논의 동향과 특징	75
1. 미국 내에서의 E.S.G. 분야 공시 현황	75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공시 법제화 동향	76
3. 미국 법률시장에서의 E.S.G. 논의 동향	78

제3장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 현황 / 81

제1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및 특징	83
1. 공시 현황	83

목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공시 기업의 특징	87
3. 공시보고서의 특징	102
제2절 국내 E.S.G. 평가 모형 및 특징	109
1. 국내 주요 E.S.G. 평가 모형 및 지표	109
2. 국내 주요 E.S.G. 평가 현황	140
제3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의 시사점	143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관련 시사점	143
2. E.S.G. 평가 관련 시사점	145

제4장 E.S.G. 공시 의무화 확대 현황과 쟁점 / 147

제1절 E.S.G. 정보공시 의무 확대 논의 현황	149
1. 현행 E.S.G. 관련 공시 의무 현황	149
2.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153
제2절 E.S.G.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160
1. E.S.G. 공시 강화에 대한 해외 기업 의견	160
2. 국내 기업 E.S.G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	162

제5장 E.S.G. 공시 제도화 전망 / 165

참고문헌	171
부록	181
부록1. [Directive 2013/34/EU]	183
부록2. EU NFRD 국내 이행(transposition) 현황	18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필요성과 범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E.S.G. 담론의 전세계적 확산

2020년 촉발된 COVID-19 확산을 계기로 세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해 비재무적 성과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E.S.G.란, 투자 및 주요 경영전략으로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적 요소 이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한다. 즉 E.S.G.를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비재무성과에도 기업의 성과와 전략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00년대 중반, E.S.G.에 관한 담론을 시작한 데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글로벌 컴팩트(UNGC)의 역할이 기여한 바가 크다.¹⁾ 2004년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의 요청으로 UNGC와 스위스 연방 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보고서가 이른바 E.S.G. 이슈를 자산관리, 유가증권거래에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작성하면서부터 E.S.G.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²⁾

1) 이은선·최유경,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1-19-④ (2021), 10면.

2) UNGC. (2004). “Who Cares Wins”, p.22. 이 보고서는 기업 및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 선택과 관련해 환경 이슈, 사회적 이슈, 기업 지배구조 이슈를 각각 5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음.

(https://www.unepfi.org/fileadmin/events/2004/stocks/who_cares_wins_global_compact_2004.pdf)

(마지막 방문: 2021. 7. 28.)

이어 2005년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협력하여 E.S.G.와 투자의 기준 관계에 관한 법적 해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³⁾ 투자전략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거버넌스) 요소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투자 기준 분석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E.S.G.가 글로벌 규범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S.G. 중심의 투자가 가능케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도 해석된다.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 1월 블랙록(BlackRock)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관투자자가 명시적으로 지금까지 주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왔다고 평가되는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economy)’ 지배구조를 거부하고,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focused governance)’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면서 E.S.G.는 기업이 단기적인 주주가치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리스크(risk) 관리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그널로 이해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20년 블랙록의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은 E.S.G.를 적용한 투자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기준 보고서의 공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⁵⁾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주주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E.S.G. 행동주의로의 진일보(進一步)이기도 하다.⁶⁾

3) 보고서명: 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
(https://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freshfields_legal_resp_20051123.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4) 이은선·최유경, 앞의 이슈페이퍼, 11면.

5) 이은선·최유경, 앞의 이슈페이퍼, 12면.(<https://www.blackrock.com/corporate/literature/publication/black-commentary-tcf-d-sasb-aligned-reporting.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6) 이와 관련하여서는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38권 제2호(2019), 18-19면.

이처럼 COVID-19 이전에도 유럽은 물론 미국 등을 중심으로 E.S.G.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주들의 단기실적주의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인식과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⁷⁾ 이때를 전후로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17년경에 이르러서야 블랙록(BlackRock), 벵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SGA) 등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뒤늦게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⁸⁾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들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 대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원칙 확립 및 E.S.G. 공시제도 강화⁹⁾ 등의 양상으로 비재무적 요소들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추세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기도 하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의 개념은 사회적 가치 개념만큼이나 ‘형성 중’에 있는 개념으로서 의무화 또는 법제화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한 국가 목표로서의 SDGs,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등 연관 개념과도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E.S.G. 가운데 특히 사회(Social) 분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정거래나 일부 인권, 근로권 보장 등에 국한된 영역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진데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논의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관점에서 민간부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E.S.G. 관련 쟁점을 연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¹¹⁾

7) 신석훈, 앞의 논문, 9-10면.

8) 신석훈, 앞의 논문, 9면.

9)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80998c\(\[big_story\] 금융의 공존 투자 키워드 'E.S.G.', 2021.01.26\)\(마지막 방문: 2021. 7. 28.\)](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80998c([big_story] 금융의 공존 투자 키워드 'E.S.G.', 2021.01.26)(마지막 방문: 2021. 7. 28.))

10)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협이 앞선 국가들을 중심으로 E.S.G. 관련 등급 평가 없이는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며, 2018년 기준으로 전세계 E.S.G. 투자 규모 또한 약 30조 6,830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하여 약 3배 가량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보고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금융투자협회, 2020) 참조.

11) 이미 기획재정부는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부 항목에 대하여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특히 법적으로는 E.S.G. 관련 ‘공시’와 ‘보고의무’ 등을 중심으로 회사와 개별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주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내부자거래 규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개선 요구들이 결국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되어 공시의무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¹²⁾

한편 지금까지의 E.S.G.에 관한 국내 논의는 지난 십여 년 간 치열하게 논의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확대와 그 실질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즉 E.S.G. 공시 의무의 강화 및 확대 속에서 이를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고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며, 그 마저도 불법이나 편법 등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한하고 기업 행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에만 천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공적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그 동안 사회적 가치에 관해 고민해 온 두 개 기관 간 협동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의 측면에서 국내외 E.S.G. 공시 동향, 나아가 법제화 전망을 소개·분석하고자 한다.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럴수록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충실한 내용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토록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E.S.G. 관련 기업 공시 항목을 조정하고 기업별 특성에 따른 E.S.G.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가 중장기적으로 함께 고민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2. 국내외 E.S.G. 공시 의무의 가속화

(1) 한국 금융위원회의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지난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강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양립 등 관련 항목을 E.S.G. 관련 공시항목으로 보고, 대폭 신설·보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https:// www.aajnews.com/view/20210419141057049](https://www.aajnews.com/view/20210419141057049)(마지막 방문: 2021. 7. 28.)

12) 신석훈, 앞의 논문, 12-13면.

들을 대상으로 2026년과 2030년을 각각 목표로 설정하여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¹³⁾

이는 COVID-19 이후 국내외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존속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적극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투자자로 하여금 공시 정보 이용 편의 제고, ② 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 ③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및 ④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원칙
- ◆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 ◆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 ◆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뿐만 아니라 위의 가이드스는 현재까지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KOSPI) 상장사들만 부담하였던 기업의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른바 가이드스(guidance)의 법적 지위나 효력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대략의 목표나 지표 등은 사회적 가치의

13) <https://www.fsc.go.kr/no010101/75176?srchCtgr=&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마지막 방문: 2021. 7. 28.)

창출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E.S.G. 각각의 영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표 1>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발표 (2021년 1월 14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계획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공시 의무화 추진계획
1단계	(22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25년): 자율공시 활성화(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제시)
2단계	(24년~):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26년~):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대상 미정)
3단계	(26년~):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2) 해외의 E.S.G. 관련 공시 의무화 추세

해외 각국의 경우에서도 E.S.G. 정보공시 강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사회공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E.S.G.는 COVID-19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전 세계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금융권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핵심적 전략으로 부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 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2019/2088)”이 발효함에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E.S.G. 경영을 위해 금융지주 내 대부분 E.S.G. 전담부서 설립(개편) 및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며, 계열사(카드, 은행 등)는 중장기 전략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E.S.G. 관련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며, E.S.G. 활성화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기업과의 E.S.G.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로써 주요

금융지주사들 뿐만 아니라 E.S.G.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사와 국책은행, 국민연금 등에서도 E.S.G.를 경영, 투자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이 같은 동향은 국내에서도 E.S.G.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E.S.G. 경영 평가는 물론 E.S.G.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인증 평가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E.S.G.가 주목받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어 주요 금융 회사들은 E.S.G.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E.S.G. 전담조직 개편하고, E.S.G.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각종의 E.S.G. 금융상품 등을 출시하는 등의 움직임으로도 포착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美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가이드라인(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을 발행하여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며, 입법 이후에도 SEC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에 따라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 E.S.G.가 미치게 될 파급 효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SASAC)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충족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을 발간하여 지난 2008년부터 공기업의 CSR 정보공시시스템 마련을 요구해 오고 있다. 그 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는 상장기업에게 컴플라이-익스플레인(Comply-or-Explain) 원칙을 바탕으로 한 통합보고서 발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계기로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논의를 집중시키고, 적절한 법과 제도의 마련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유럽의 E.S.G. 공시 노력이 두드러지며, 영국, 스웨덴 등은 EU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여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¹⁴⁾

14)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2008), 네덜란드의 Dutch Civil Code, 스웨덴의 Guidelines for External Reporting by State-Owned Companies (2007), 영국의 Companies Act (2006) 등이 있음.

제2절 필요성과 범위

1. 연구 필요성

(1) E.S.G. 개념의 구체화 및 관련 개념과의 관계 정립

E.S.G.의 개념은 무엇보다 현재 CSR, CSV, SDGs 나아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령, 현재 국내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법률(안) 상으로 광의의 E.S.G.를 포괄하는 내용을 사회적 가치 정의로 이해하고 있다(안 제2조). 반면, 현재 E.S.G.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기업의 불법·편법 등 기업의 일부 반사회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업 행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궁극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서의 사회적 가치 담론과 E.S.G. 가치의 확산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시 제도의 확립 과정에서 해당 개념의 정립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¹⁵⁾

(2) 주요국 및 국내 E.S.G. 공시 제도 현황 및 법제화 동향의 분석

E.S.G.는 결국 공시 제도의 확대 및 공시 의무화를 통한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E.S.G. 인식 제고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늘어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자칫 한시적인 유행에 머물지 않도록 관련 공시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 민간 영역에 대한 E.S.G. 법제화는 반드시 경성법을 통한 가장 강력한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市場)이 가지는 역할을 충분히 극대화 하면서도 최소한의 E.S.G.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유인(誘引)할 수 있는 연성법적 형태로의 모색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은 일정한 규범력을 가지는 E.S.G. 공시 또는 지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EU 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 이 개념들에 관하여서는 이은선·최유경, 앞의 이슈페이퍼, 19-20면에 별도로 정리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념의 이해를 본 보고서에서 원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코스피(KOSPI) 상장사들의 경우 2026년까지 E.S.G.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코스닥(KOSDAQ)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기업들의 현행 E.S.G.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과 현행 지표의 평가 사례를 일부 소개함으로써 그 운영의 특성, 한계,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 내지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E.S.G. 공시의무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반응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3) E.S.G. 공시의무 확산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과 법제개선 방향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E.S.G. 관련 공시 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법령에서는 E.S.G. 관련 사항이 체계적·종합적으로 담겨 있다기 보다 개별 법령마다 일부 공시대상 기업, 공시사항, 공시 매체 등에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서로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S.G. 공시 관련 국내 법령의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거래소의 가이드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E.S.G.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전략은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적이 수단인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S.G.에 관한 연구는 일부 대기업으로 등에 대한 공시의무 확대를 위해 E.S.G. 지표나 배점을 성급하게 확정하여 제도화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확산을 위한 그간의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E.S.G.와 연계하는

등 증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주로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온 만큼 좀 더 보편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개념으로서의 E.S.G.를 통해 사회적 가치 담론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1)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 현황 및 법제화 동향 분석

먼저, 이 보고서는 EU의 두 가지 E.S.G. 공시 관련 지침과 규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유럽 등 각국에서의 이 같은 E.S.G. 공시 의무 강화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행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보다 정확한 해외 규정의 이해와 관련 법제도, 효력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지침과 규정의 내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①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¹⁶⁾
- ② 2019년 EU 금융서비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2019/2088/EU)¹⁷⁾

(2) 국내 E.S.G. 공시 제도 법제화 전망

E.S.G. 공시 의무가 확산될 조짐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2007년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일부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이 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 한 개정안이 그간 총22건¹⁸⁾ 가량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화로 이루

16) 특정 대형 사업 및 그룹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2013/34/EU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4년 10월 22일 지침 2014/95/EU.

17) EU 2019/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18) 관련하여 제18대 국회 2건, 제19대 7건, 제20대 12건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행 제21

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도 이들 개정안의 대부분은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10년 사이에 일응 공시 확대 성과가 있기는 하나 개별 사안이 아닌 E.S.G. 전반에 관한 정보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전무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4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 및 한국거래소의 'E.S.G. 공시에 관한 가이드선스'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규모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전망 등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가이드선스는 비록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국내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내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나아가 공급망(supply chain) 상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체에 그 부담이 미칠 것으로 보여 E.S.G.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E.S.G. 관련 법제화를 논의하기 전에 한국의 'E.S.G. 가이드선스'가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함에 있어서 현실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등을 점검할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국내 일부 기업들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표에 따라 2006년부터 이미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한국거래소의 E.S.G. 가이드선스 상의 E.S.G. 세부 지표, 공시 절차 등에 관해 소개한다. 무엇보다 공시제도가 일반적으로 노정(路程)하는 특징과 한계에 주목하면서, 향후 E.S.G. 공시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고 투명하며, 객관적·합리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존하는 어느 지표도 사회 분야의 지표는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지배구조 분야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 고찰하는 해외동향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의 연계 내지 활용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대에서 1건이 발의, 계류 중에 있음.

(3) 연구 방법

이 보고서의 제1장과 제2장 및 제4장의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에 관한 분석 부분은 한국법제연구원(최유경) 측이 집필하고, 그 외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은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가치연구원(정아름) 측이 함께 집필하였다. 결론 도출은 두 기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가 협의하여 공동집필 하였다. 국내외 E.S.G. 공시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학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하여 주요 집필 내용을 보완하고 검증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 심층 면접 방식으로 제1차 F.G.I. (2021년 7월 7일~9일) 및 제2차 F.G.I. (2021년 7월 13일)를 수행함으로써 E.S.G.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국내의 산업계 의견도 일부 반영하고자 했다.¹⁹⁾

회의 일시	주제 및 발표자
제1차 워크숍 (2021년 5월 7일)	주제: E.S.G. 추구와 기업의 가치의 상관관계 • 발표: Aron Yoon 교수(美 노스웨스턴대학교) "기업의 E.S.G 투자행위와 주주의 가치(Shareholder Value)"
제2차 워크숍 (2021년 7월 6일)	주제: 국내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 발표: 김정욱 센터장(KDI 규제연구센터) • 발표: 선우희연 조교수(세종대학교 경영대학) • 발표: 윤진수 본부장(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제1차 F.G.I. (2021년 7월 7일~9일)	주제: E.S.G.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기업 담당자 의견 청취 • 인터뷰: OOO 팀장 (대한상의) • 인터뷰: OOO 팀장 (A기업) • 인터뷰: OOO 팀장 (B기업)
제2차 F.G.I. (2021년 7월 13일)	주제: E.S.G.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인터뷰: OOO 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 인터뷰: OOO 팀장 (C기업)

19) 요청에 따라 F.G.I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2장

해외 E.S.G. 정보공시

법제화 동향

제1절 EU의 E.S.G.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효력

제2절 미국의 E.S.G. 논의 동향과 특징

제2장

해외 E.S.G. 정보공시 법제화 동향

제1절 EU의 E.S.G.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효력

1. E.S.G. 공시 의무의 법제화 연혁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E.S.G. 공시 규제를 맨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2000년 최초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에 이어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등에 이르기까지 연기금을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E.S.G. 공시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²⁰⁾ 한편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E.S.G. 투자 확산을 위한 글로벌 연기금, 투자자 등 연합체로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기구를 설치하고,²¹⁾ 2021년 5월 현재 약 3,945개 기관이 참여하여 이른바 PRI 6개 원칙을 준수할 것에 서명한 바 있다.²²⁾ 이 가운데 약 911여 개 회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서명하였

20) 사회책임투자규제 특히 E.S.G.규제 법제의 동향에 대해서는 Neher, Agnes L., Global E.S.G. Regulatory Mapping, <http://www.unpri.org/areas-of-work/policy-and-research/responsible-investment-standards-codes-and-regulation/>; O,Neill, Laura, 위의 자료 ; UKSIF, 위의 자료 ; 권순원,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SRI), 연금포럼 Vol.46, 2012참조.

21) <https://www.unpri.org/>(마지막 방문: 2021. 7. 28.)

22) 대표적인 서명기관으로는 서명기관으로는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같은 유럽, 미국 최대 규모의 연금펀드를 포함하여, 뉴욕공무원연금(NYCERS), 뉴욕교원연금(NYSLRS), 영국대학교원연금(USS), 미쯔비시 UFJ 신탁은행, 노르웨이 정부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태국 정부연금, 기업연금인 BT Pension Scheme 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회진 외, “사회책임투자의 원칙과 적용”, 한국금융연구원, 2006 1~2면 참조.

file:///C:/Users/YKChoe/Downloads/20060929_RI%EC%97%B0%EA%B5%AC%ED%9A%8C%ED%95%A9%EB%B3%B8.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으며,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서명한 회원의 수가 약 1,565개로 전체 참여기관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 구성비를 보면, 투자관리자(Investment Manager)가 약 73%(2,897개)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자산 소유자(Asset Owner) 15%(608개), 서비스 공급자(Service Provider) 11%(439개) 등으로 집계된다.²³⁾ 한편, 헤드쿼터가 한국인 기관은 다음의 약 11개 가량이다.

<표 2> 헤드쿼터가 한국으로 분류된 유엔책임투자원칙 서명 회원

명칭	구분	서명일/연번*
Socius	Investment Manager	2020-11-02
Well to Sea Investment Co., Ltd.	Investment Manager	2020-10-19
Murex Partners	Investment Manager	2020-09-29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vice Provider	2020-03-27
Praxis Capital Partners	Investment Manager	2019-05-10
VI Asset Management Korea	Investment Manager	2018-06-28
E.S.G. Moneta Co., Ltd.	Service Provider	2017-02-21
Anda Asset Management	Investment Manager	2016-07-01
Who's Good	Service Provider	2015-12-04
Korea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sset Owner	39989
Sustinvest Co., Ltd.	Service Provider	39253

출처: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집계한 엑셀파일을 참고하여 재구성
(<https://www.unpri.org/>)* 2014..4.8.이전 서명 회원은 고유식별 번호로 관리)

이와 같은 기준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금융기관,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70여 명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 6개 원칙 33개 세부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투자 의사결정시 E.S.G. 반영, 투자 대상기업의 E.S.G. 정보 공개 요구, PRI의 충실한 이행 등이다.

이 기구의 회원은 기관 투자자들로서 수혜자의 최상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활동할 의무를

23) <https://www.unpri.org/signatories/signatory-resources/signatory-directory>(마지막 방문: 2021. 7. 28.)

지닌다. 회원들은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쟁점들이야말로 말로 다양한 기업, 지역, 자산, 그리고 시대를 아울러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본 기구의 회원들은 책임투자원칙의 적용으로 투자자들이 사회의 더 광범위한 목표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이들의 신탁 의무와 일치하는 다음의 원칙들에 대해 약속한다.

PRI 6개 원칙²⁴⁾

- ✓ 원칙 1 :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 원칙 2 :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반영한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 ✓ 원칙 3 :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 ✓ 원칙 4 :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 원칙 5 :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 원칙 6 : 우리는 각자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즉 PRI 원칙은 ①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②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포함토록 하며 ③ 투자대상기업에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④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들의 수용 및 실행을 증진시키고, ⑤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⑥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관한 각자의 활동과 진전 상황을 각각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4) PRI 6개 원칙에 대한 번역은 이은선·최유경, 앞의 이슈페이퍼, 11면.

2.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²⁵⁾

(1) 제정 배경과 목적

유럽연합(EU)은 “특정 대형기업 및 그룹에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3/34/EU)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4년 10월 22일 지침(2014/95/EU)”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회원국에서 사회 및 환경 정보의 투명성을 유사한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²⁶⁾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사업의 비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책임있고 투명하며 책무를 다하는 비즈니스 행동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의 이익 증진 및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회복의 길’이라는 결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서 공개되는 비재무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최소한 환경 문제, 사회 및 고용 관련 문제,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문제 등에 이르는 비재무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의회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한편,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일정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의회는

25) 특정 대형 사업 및 그룹에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2013/34/EU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4년 10월 22일 지침 2014/95/EU.

26)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L0095&from=FI>(마지막 방문: 2021. 7. 28.).

이들 비재무정보의 공개가 사회적 정의와 환경보호를 장기적인 수익성과 결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변화에 필수적임을 인정하였다(2014/95/EU (3)). 그 중에서도 특정 대형사업의 경우, 비재무정보 공개에 대해 각 국가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 기업,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014/95/EU (4)). 한편, 기업이 정부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책, 결과 및 리스크에 대해 공정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해야 할 것(2014/95/EU (5))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은 기존의 유럽의 회계지침인 Directive 2013/3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이하 ‘2013 EU 회계지침’ 또는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아 비재무정보 역시 공시(公示) 되도록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²⁷⁾ 2013 EU 회계지침을 살펴보면 연결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내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즉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은 2013년 EU 회계지침(NFRD) Directive 2013/34/EU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2013년 NFRD 규정의 주요 체계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로 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은 제1조(NFRD Article 1)에서 2013 EU 회계 지침 상의 제19a조 및 제29a조를 신설하고, 동 지침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8조를 개정하여 이른바 비재무정보 공시(公示)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E.S.G. 관련 공시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하여 확립하기에 이른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즉 2014년 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2013년 회계지침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더하여 2014년 신설된 E.S.G. 공시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한다.²⁸⁾

27)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182:0019:0076:EN: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28) 해당 2013년 EU지침의 원문 목차는 〈부록 1〉 참조.

〈2013 EU 회계지침 (Directive 2013/34/EU)〉²⁹⁾의 체계

제 1 장 이해 관계 및 그룹의 범위, 정의 및 범주

제 1 조 범위

제 2 조 정의

제 3 조 사업 및 그룹의 범주

제 2 장 일반 조항 및 원칙

제 4 조 총칙

제 5 조 일반 공시

제 6 조 일반 재무보고 원칙

제 7 조 재평가 된 고정 자산의 대체 측정 기준

제 8 조 공정 가치의 대체 측정 기준

제 3 장 대차 대조표 및 이익 및 손실 계정

제 9 조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정에 관한 총칙

제 10 조 대차 대조표의 제출

제 11 조 대차 대조표의 대체 표시

제 12 조 특정 대차 대조표 항목과 관련된 특별 조항

제 13 조 손익 계정의 표시

제 4 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5 조 재무제표 주석에 관한 총칙

제 16 조 모든 사업과 관련된 재무제표 주석의 내용

제 17 조 중대형 기업 및 공익 단체에 대한 추가 공시

제 18 조 대규모 사업 및 공익 단체에 대한 추가 공시

제 5 장 경영 보고서

제 19 조 경영 보고서의 내용

제 19a 조 비재무 보고 (*신설)

제 20 조 기업지배 구조 선언문

제 6 장 연결 재무제표 및 보고

제 21 조 연결 재무제표 및 보고의 범위

제 22 조 연결 재무제표 작성 요건

- 제 23 조 연결회계 면제
- 제 24 조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 제 25 조 그룹 내 사업 결합
- 제 26 조 비례 통합
- 제 27 조 관련 사업의 지분 회계
- 제 28 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29 조 통합 경영 보고서
- 제 29a 조 통합 비재무 보고(*신설)

제 7 장 공시

- 제 30 조 일반 공시 요건
- 제 31 조 중소기업의 단순화
- 제 32 조 기타 공시 요건
- 제 33 조 재무제표와 경영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책임

제 8 장 감사

- 제 34 조 일반 요건
- 제 35 조 감사 보고서 2006 / 43 / EC의 35 관한 지침 수정

제 9 장 면제 및 면제 제한에 관한 조항

- 제 36 조 소액 사업에 대한 면제
- 제 37 조 자회사에 대한 면제
- 제 38 조 다른 기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기업
- 제 39 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기업에 대한 손익 계정 면제
- 제 40 조 공익 단체에 대한 면제 제한

제 10 장 정부에 대한 지불보고

- 제 41 조 정부에 대한 지불보고와 관련된 정의
- 제 42 조 정부에 대한 지불보고에 필요한 업무
- 제 43 조 보고서 내용
- 제 44 조 정부에 대한 지불에 관한 통합 보고서
- 제 45 조 공개
- 제 46 조 동등성 기준
- 제 47 조 동등성 기준의 적용

제 48 조 검토

제 11 장 최종 규정

제 49 조 위임권의 행사

제 50 조 위원회 절차

제 51 조 벌칙

제 52 조 지침 78/660/EEC 및 83/349/EEC의 폐지

제 53 조 전환(국내법제로의 수용)

제 54 조 발효

제 55 조 송부

이 뿐만 아니라 NFRD의 제2조는 보고에 대한 지표, 제3조는 집행위원회의 NFRD 시행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제4조를 통해 회원국들의 해당 내용의 국내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2) 주요 내용과 절차

1) 2014 유럽 회계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 NFRD 제1조

① 적용 대상

2013년 유럽 회계 지침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이며³⁰⁾, 자산총액 2,000만 유로(Euro)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Euro) 이상인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y, 이하, PIE)는 재무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모회사(母

29) DIRECTIVE 2013/3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reports of certain types of undertakings, amending Directive 2006/4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30) 본사의 위치와는 관계 없이 EU 내에 500명 이상(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250명)의 직원이 일하는 지사가 있다면 본 지침을 지켜야 한다. 또한 그룹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會社)가 공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회사(子會社)가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모회사가 그룹을 대표하여 통합 비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자회사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자회사의 보고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제 29a 조 3). 이에 관한 NFRD의 설명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같은 회계연도에 해당하며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별개의 보고서가 제공된 경우라면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재무보고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2014/95/EU (6)).

* 이 때 공익실체(PIE)는 EU 회원국 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회원국에서 공익실체로 지정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또한 PIE 중 특정 회원국 내의 정규시장에서 이전 가능 증권을 거래하는 기업, 즉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보고서에 다양성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회원국은 지침 2004/39/EC의 제4조 제1항 제14호로 규제되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 주식 외에 단지 증권만을 발행한 제1항에 언급된 기업에 대해, 그 기업이 다자간 거래 시설에서 거래되는 주식³¹⁾을 발행한 것이 아닌 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이 다양성 보고에는 사업의 관리·경영·감독 기구에 관해 예를 들어 연령, 젠더, 교육과 직업적 배경 등의 측면에 관하여 적용되는 다양성 정책, 그 다양성 정책의 목표, 보고기간 동안 그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다. 만일 이와 같은 정책 등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에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제20조 제1항 (g)).

반면 본 지침은 50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NFRD 제1조를 통해 개정된 2013 EU 회계지침 제20조 제1항). 즉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국제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유럽 2020 전략의 'Think small first(중소기업우선정책)' 원칙에 따라, 본 지침에서 부과하고 있는 새로운 공시 요건은

31) 지침 2004/39/EC의 제4조제1항제15호의 의미에 해당되는 다자간 거래 시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및 그룹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2014/95/EU (13)).

② 적용시기

2013년 유럽회계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부터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③ 보고내용 (제19a조 1항, 제29a조 1항)

본 지침이 담고 있는 보고내용은, 환경, 사회적 및 고용에 관한 사안, 인권존중, 반부패 및 뇌물 문제에 관하여 그룹의 발전, 성과, 입장 및 그 활동의 영향에 관해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의 정보를 포함한다. 보고의무가 있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룹의 사업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
- 그룹이 이행한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포함하여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설명;
- 이러한 정책의 결과;
- 그룹의 운영에 연계된 사안에 관한 주요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그룹의 관리방안
- 특정 비즈니스에 적합한 비재무적 핵심성과지표(KPI)

해당 조항에 따른 NFRD 본문 설명에 따르면, 보고 내용에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또 적절히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현재의 그리고 미래에 예견되는 영향, 재생 에너지 및/또는 비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및 대기 오염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및 고용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보고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에 “양성평등,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 이행, 노동조건, 사회적 대화, 고지를 받고 협의할 노동자의 권리 존중,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존중, 작업장 내 보건과 안전, 지역 사회와의 대화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 그리고 그러한 지역사회의 보호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인권, 반부패 및 뇌물과 관련하여, 비재무정보 보고에는 인권침해 방지 및 부패와 뇌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수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2014/95/EU (7)).

또한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미 드러난 주요 리스크(risk) 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가 실현되어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심각성은 그 규모와 중대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부작용의 위험은 사업 자체의 활동에서 비롯되거나 기업 운영과 연계될 수 있으며, 적절하고 비례적인 경우 공급망과 하도급망을 포함한 그 제품, 서비스 및 사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추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2014/95/EU (8)).

④ 보고 가이드라인 (지침 (9)문단, 제19a조 1항, 제29a조 1항)

정보공개방식은 i) 회원국의 비재무정보공시 프레임워크, ii) EMAS과 같은 EU 비재무정보 가이드라인 또는 프레임워크, 또는 iii) 유엔 글로벌컴팩트, 유엔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국제 표준화 기구의 ISO 26000,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관한 노사정 원칙선언,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또는 기타 공인된 글로벌 비재무정보 보고 프레임워크를 따를 수 있다.

이 때 회원국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기업은 이 중 어느 프레임워크를 따랐는지 명시해야 한다.

⑤ 비재무정보 보고서의 형식 (제19a조 4항, 제29a조 4항)

회원국 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경영보고서(management report) 또는 별도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그런데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경영보고서와 함께 공시를 하거나 당해 회계정보 공시 후 6개월 이내의 합리적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기업 웹페이지에 공지하고 이것이 경영보고서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⑥ 보고원칙 (제19a조 1항, 제29a조 1항)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 상 회계연도의 평균 직원 수 500명의 기준을 초과하는 공익실체인 대규모 사업은 최소한 환경, 사회적 및 고용에 관한 사안, 인권존중, 반부패 및 뇌물 문제에 관하여 사업의 발전, 성과, 입장 및 그 활동의 영향에 관한 이해를 하기에 필요한 범위까지 정보를 담은 비재무 보고를 경영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때 기업이 보고하는 사항 중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비재무 보고서에서 제시해야 한다.

⑦ 예외인정 (제19a조 1항, 제29a조 1항)

EU 회원국은 관리·경영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이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동하며, 그와 같은 정보의 공개가 기업의 상업적 지위에 심각한 불이익(prejudice)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임박한 개발 또는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이 그 기업체의 사회적 활동의 진행, 성과, 입장, 영향을 공정하고 균형 잡히게 이해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 관련 정보를 누락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보고여부 확인 (제19a조 5항, 제29a조 5항, 제 34조 추가된 내용)

모든 EU 회원국은 법정 감사관 또는 감사회사를 통해 제1항에 언급된 비재무 보고서 또는 제4항에 언급한 별도 보고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NFRD를 통한 개정을 통해 기존 2013 유럽 회계지침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 34조는 제19a조 제1항의 비재무보고서 및 제29a조 제1항의 통합비재무보고서 또는 제19a조 4항 및 제29a조 4항의 별도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⑨ 보고내용 검증 (제19a조 6항, 제29a조 6항)

보고내용의 검증의무 부과는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⑩ 제재조치 (제33조 1항 추가 및 신설된 내용)

회원국은 사업의 관리·경영·감독기구의 구성원들이 ‘국내법’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E.S.G. 관련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회원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⑪ 보고내용의 검토 (제48조 신설 내용)

또한 ‘보고서는 또한 OECD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유럽의 이니셔티브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소한 벌어들인 수익, 이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과 수령한 공적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들이 영업하는 각 회원국과 제3국에 대해 국가별 보고서를 연도별로 작성할 의무를 대규모 사업에 대해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 있다.

2) 집행위원회의 역할 - NFRD 제2조 및 제3조

집행위원회는 비재무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및 부문별 비재무적 주요성과지표(KPI)를 포함하여 비재무정보 공개 방법론에 대해 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2018년 12월 6일까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그 범위, 특히 대규모 비상장 사업에 관한 범위, 그 효과, 제공되는 지도와 방법의 수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3) NFRD의 국내적 수용 - NFRD 제4조

이 지침의 효력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로 비재무정보의 공개에 관한 국내법 체계의 조정이 요구되며, 특히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을 비롯해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지침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2016년 12월 6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적 조항을 시행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³²⁾ 또한 회원국들은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들이 2017년 회계연도부터 이 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관련 규정을 채택할 때, 본 지침을 언급하거나 회원국의 공보를 발간할 때 그와 같은 참조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참조를 첨부하는 방법은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정한다. EU 회원국은 본 지침에서 다루는 분야별로 채택한 국내법 상 주요 조항의 본문을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에서 이를 국내적으로 수용한 입법 형식과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3>³³⁾과 같다. EU 회원국들은 해당 지침을 국내법으로 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몇 개의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최소한 EU 지침의 기본적인 E.S.G. 공시 요건에 충족하는 기준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부록 2 참조).

32) 이와 관련한 EU 회원국 내의 국내적 수용에 관해서는 <부록 2> 참조.

33) <표 3>은 EU NFRD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회원국 별 현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NIM/?uri=CELEX:32014L0095&qid=1620709572692>(마지막 방문: 2021. 7. 28.)

<표 3> EU 2014/95/EU 회원국 별 국내적 이행(transposition)

	대기업 정의	공약실체 (PIE) 정의	보고 주제 및 내용	보고 프레임 워크	공시 방식	감사 검증	불이행 시 처벌	세이프 하버 (Safe Harbour Principle)	다양성 보고 의무
그리스	O	O	O	=	O	=	O	=	=
네덜란드	=	O	=	=	O	O	X	=	=
노르웨이	=	O	=	=	O	=	O	X	=
덴마크	O	O	=	O	O	O	O	X	O
독일	=	O	=	=	O	=	O	=	=
라트비아	=	O	O	=	O	O	O	=	=
루마니아	O	O	O	=	=	O	O	=	=
룩셈부르크	O	O	=	=	=	=	O	=	=
리투아니아	=	O	O	=	O	=	O	=	O
몰타	=	=	O	=	O	=	O	=	=
벨기에	O	O	=	=	O	O	O	=	=
불가리아	=	O	=	O	O	O	O	=	O
사이프러스	=	O	=	=	=	=	O	=	O
스웨덴	O	O	O	=	O	=	O	=	=
스페인	=	O	O	O	O	=	X	=	=
슬로바키아	=	O	=	O	O	=	O	X	=
슬로베니아	=	=	O	=	O	=	O	=	O
아이슬란드	O	O	=	=	O	O	O	=	O
아일랜드	=	=	=	=	=	=	O	=	O
에스토니아	O	=	=	=	O	=	X	X	O
영국	O	=	=	=	O	O	O	=	=
오스트리아	=	O	=	=	O	=	O	=	O
이탈리아	=	O	=	O	O	O	O	=	=
체코	O	O	=	=	O	=	O	=	=
크로아티아	=	O	=	=	O	=	O	=	O
포르투갈	O	O	=	=	=	=	O	=	=
폴란드	=	O	=	O	=	=	O	=	=
프랑스	=	O	=	=	O	O	O	X	=
핀란드	=	=	=	=	=	=	O	=	=
헝가리	=	O	=	=	O	=	O	=	=

[비고: =: EU 지침상 의무사항과 동일, X: 의무사항 제외 O: 의무사항의 부분적 적용]

출처: 저자작성, 각주 33참조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는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E.S.G. 관련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익실체(PIE)는 주로 상장기업, 금융관(은행), 보험회사(재보험사 포함)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EU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이할 점은 EU 지침 상에 공시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비재무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 사안의 판단에서 법관이 후속적으로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1천만 유로 또는 회사 전체 연간 매출의 5% 또는 위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2배까지) 부과가 가능하여 향후 E.S.G. 공시 관련 제재 내지 규제와 관련한 동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끝으로 영국은 사안별로 결정하여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원칙”을 수립하여 이른바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과 영국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경우도 위에 설명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E.S.G. 공시 관련 제재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다. 즉, 해당 공시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으로서 관련 정보의 누락, 미준수 또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만~ 15만 유로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사항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유사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³⁴⁾

34) <표 4> 및 <표 5>는 EU NFRD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회원국 별 현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NIM/?uri=CELEX:32014L0095&qid=1620709572692>(마지막 방문: 2021. 7. 28.)

<표 4> 2014 EU NFRD - E.S.G. 공시의무의 국내법적 수용(1)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구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적용대상기업	근로자 수 500명 이상(동일)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해당없음
공익실체(P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기업 • 금융기관 • 보험회사 • 비상장 유한책임 회사와 비상장 투자 펀드의 경우 그들의 순 매출이 1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자본시장 지향적 유한 책임 회사 또는 협동 조합의 법적 형태의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기업 • 은행 • 보험/재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 • 금융기관 • 보험회사
의무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원칙적 준수— 예외적 설명의 원칙	Comply and explain principle: 보고서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Safe Harbour원칙 적용여부	X	○	○	○
불이행시 처벌 (벌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관계자가 비재무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단, 판사가 개별 사건별로 재정적 제재부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천만 유로 or 회사 전체 연간 매출의 5% , or 위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최대 2배 (유럽 내 최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만~ 15만 유로 • 관련 정보 누락, 미준수 또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별로 결정·부과

출처: 저자작성, 각주 34 참조

한편,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위에서 설명한 국가들에 비하여 좀 더 엄격한 국내법적 기준을 확립하여 E.S.G.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먼저 스페인의 경우, 적용대상 기업이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인 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상장기업,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이외에도 다음의 공익실체(PIE)들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로 하여금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결제서비스 회사 및 전자화폐 회사(Payment and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 2년 연속 매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0,000명 이상인 연금금(Pension funds)
- 5,000명 이상의 고객 또는 5,0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투자 서비스 및 집합 투자 기관
- 2년 연속 매해 결산일 기준 순매출액이 20억 유로를 초과하고 직원이 4,000명 이상인 기업

뿐만 아니라 의무보고 사항에서도 앞의 표에서 살펴본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보고 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내용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표시된 금액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도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며, 벌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EU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다.

즉, i) 근로자 수 250명 이상, ii) 순 매출 3억 5천만 스웨덴 크로나(SEK) 또는 자산총액 1억 7천5백만 스웨덴 크로나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보고의무를 부담하도록 국내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의무를 갖게 되는 적용대상 기업은 매출액, 자산 또는 직원 수에 관한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회사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공익실체(PIE)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위반의 경우 「연차보고서법(Annual Report Law)」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로는 덴마크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적용 대상 기업을 EU 지침보다 강화하고 있다. 즉 다음에 열거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내법 화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자 수 500명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인권, 기후 문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의무가 존재하며, 2018년부터 모든 대기업(등급 C 및 D)에 모든 문제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지침에 정의된 대규모 기업
- 회계 등급 D(accounting class D)의 기업:
 - 상장 기업(Listed companies)
 - 국유 유한책임회사(State-limited liability companies)
- 500인 이상의 신용 회사 및 보험 회사

뿐만 아니라 덴마크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원칙”도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의무의 불이행시, 덴마크 「재무제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되며, 덴마크 「재무제표법」 제161조, 162조 및 164조에 따라 벌금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가 아일랜드의 경우,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책임자는 약식 유죄 판결 시 A급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형사제재 수단을 선제적으로 국내법 체계 내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2014 EU NFRD - E.S.G. 공시 의무의 국내법적 수용(2)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구분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적용대상기업	근로자 수 500명 이상		근로자 수 250명	500인 이상의 신용 회사 및 보험 회사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순 매출 3억 5천만 스웨덴 크로나(SEK) 또는 자산총액 1억 7천5백만 스웨덴 크로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에 정의된 대규모 기업 회계 등급 D
공익실체 (PIE)	상장 기업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장기업 금융기관 보험 회사 결제서비스 회사 및 전자 화폐 회사 2년 연속 매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0,000명 이상인 연기금 5,0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투자 서비스 및 집합 투자 기관 2년 연속 매해 결산일 기준 순매출액이 20억 유로를 초과하고 직원이 4,000명 이상인 기업	매출액, 자산 또는 직원수 중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회사 또는 법인 공익실체(PIE)에 국한되지 않음	근로자 수 500명 미만이라도 인권, 기후 문제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고의무 有 2018년부터 모든 대기업(등급 C 및 D)은 모든 문제에 대한 보고의무 有
의무보고사항	사업 모델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재무제표 내용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표시된 금액에 대한 설명			

구분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원칙적 준수-예외적 설명의 원칙	Comply and explain principle: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Safe Harbour 원칙 적용여부	○	○	○	X
불이행시 처벌 (벌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벌부과 可 : 미준수 시 형사범 죄로 유죄판결 可 • A급 벌금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병과 可) 	명시되지 않음	「연차보고서법」 (Annual Report Law) 적용	「재무제표법」 위반 시 벌금부과 (§§161,162,164 등)

출처: 저자작성, 각주 34 참조

3. 2019년 EU 금융서비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2019/2088/EU)³⁵⁾

(1) 제정 배경과 목적

1) 제정 배경

앞서 살펴본 EU 회계지침과 그 수정 지침은, 2019년에 이르러 “금융 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2019/2088) (Regulation 2019/2088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또는 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 ‘SFDR)’에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즉

35) EU 2019/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9R2088-20200712>(마지막 방문: 2021. 7. 28.)

EU는 지속가능한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참여자 등이 최종 투자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시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SDGs에 맞추어 저탄소의,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효율적인 순환 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유럽연합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열쇠라고 명시하게 되었다.

이는 집단 투자 사업 활동의 착수 및 추구를 촉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동시에 최종 투자자에게는 보다 통일된 보호를 보장하고, 광범위한 금융상품의 이익을 얻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최종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2019/2088/EU (4)). 그러나 최종투자자에게 투자 결정 과정이나 자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의 통합,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고려,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 또는 환경적·사회적 특성의 증진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규정이 사실상 부재했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해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상황들에 직면함에 따라 공공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도 각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자문사들이 지속가능 위험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의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2019/2088/EU (8)).

그런데 최종 투자자들에게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한 유럽연합의 일관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에 대해 회원국에서 상이한 조치와 접근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경쟁의 현저한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공시 기준과 시장 기반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이한 금융 상품 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상품과 유통 채널에 대해 불공평한 경기장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최종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투자 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해졌고, 무엇보다 투명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규칙의 부재로 최종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위험이나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에 대하여, EU 회원국 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일관적인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규정을 통해 내부시장 기능에 대한 기존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금융상품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SFDR이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다(2019/2088/EU (9)).

2) 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성 위협의 통합,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고려, 환경적·사회적 특성의 증진, 지속가능한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참여자와 자문사가 최종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 할 때 최종 투자자에게 계약 전 지속적인 공시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본인-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9/2088/EU (10)).

즉, 이 규정은 금융시장 참여자와 재무 자문들에게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한 통합적 시그널링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고 일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을 제시하고자 했다(2019/2088/EU 제1조).

(2) 주요 내용과 절차

2019년 EU 금융서비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주요개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투자’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i) 에너지, 재생 에너지, 원자재, 용수 및 토지의 사용, 폐기물 배출, 온실가스 배출 및 그 활동이 주요 생물다양성과 순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요 자원효용성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것과 같이 환경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ii)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특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거나 사회적 응집력, 사회 통합 및 노동관계를 촉진하는 투자); 및

iii) 인적 자본이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투자는 위의 목적 중 어느 것도 심각히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받는 기업이 특히 건전한 경영구조, 고용관계, 직원의 보수, 조세준수 등에 관하여 좋은 지배구조 관행을 준수하는 투자

즉 ‘지속가능성 위협’은, 그러한 위협 발생 시 투자 가치에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물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또는 지배구조의 사건 또는 조건(event or

condition)을 의미한다. 한편 ‘지속가능성 요소’는 환경적, 사회적 및 고용사안, 인권 존중,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사안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동 조항(2019/2088/EU 제2조)은 EU 내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자문사인 기업 뿐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융시장 참여자’에는 보험기반투자상품(IB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업, 포트폴리오 운용을 제공하는 투자회사, 직업퇴직연금기관(IORP), 연금상품 제조업체, 대체투자펀드매니저(AIFM), 범유럽 개인연금상품(PEPP) 제공자, 적격 벤처캐피털펀드의 운용자, 사회적 기업가 펀드 매니저,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단투자 운용 회사(UCITS 운용회사),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는 신용 기관이 포함된다. **둘째**, ‘자문사’의 경우에는 IBIP와 관련한 보험 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인, IBIP와 관련한 보험 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사,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신용 기관,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 회사, AIFM, UCITS 운용 회사가 해당된다.

한편 ‘금융상품’이라 함은 포트폴리오, 대체투자펀드(AIF), 보험기반 투자상품(IBIP), 연금상품, 연금제도(pension scheme), 양도성유가증권 집단 투자(UCITS), 범유럽개인연금상품(PEPP)을 뜻한다(제2조). 또한 본 규정(2019/2088/EU) 제4조와 제7조에서는 기업의 수준과 금융상품 수준 별로 구체적인 공시 내용을 정하고 있다.

1) 금융시장 참여자 및 자문사

① 웹사이트 공시

이 규정 제3조(지속가능성 위험 통합 정책)는, “금융시장 참여자 및 자문사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보험 자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천명한다. 아울러 제4조(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에 따르면 “금융시장 참여자: 투자결정이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PAIs)을 고려하는 경우, 그 규모, 활동의 성격과 범위, 이용 가능하게 할 금융 상품의 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영향에 관한 실사 정책에 대한 내용을 그들의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 사항의 확인과 우선순위 및 지표에 관련된 정보 및 이에 대한 계획된 조치에 관한 설명, 정책에 대한 요약,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사 및 보고 표준 준수 그리고 파리 협정의 부합되는 정도 등이 있다. 만약 반대로 투자 결정이 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또한 추후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특례로써 2021년 6월 20일부터 대차대조표일에 회계연도의 평균 직원 수 500명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시장 참여자 및 2013/34/EU 제3(7)조에 언급된 대규모 그룹의 모기업인 금융시장 참여자는, 웹사이트에 투자 결정이 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그들의 실사 정책에 관한 보고를 공표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 보고에는 적어도 위에 나열한 언급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자문사의 경우에도 금융시장 참여자와 거의 비슷하게 그 규모, 활동의 성격과 범위, 자문 대상인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이 투자 자문 또는 보험 자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 사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유지해야 한다. 반대로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투자 결정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이유 및 추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는지 여부와 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끝으로 제5조(보수(remuneration) 정책) 조항은 “금융시장 참여자 및 재무자문은 모두 이들의 보수 정책이 어떻게 지속가능성 위험의 통합과 연관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 이를 웹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공시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② 계약 전(前) 공시(제6조)

이 규정은 또한 금융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계약 전 공시’를 통해 지속가능성 위험이 투자 결정에 통합되는 방식 및 이러한 위험이 그들의 금융상품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금융시장 참여자가 지속가능성 위험

이 그들의 투자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라면, 계약 전 공시에서 그 사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자문사 역시 계약 전 공시가 요구된다는 점과 그 내용이 금융시장 참여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즉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그들의 투자 또는 보험 자문에 통합되는 방식 및 지속가능성 위험이 그들이 자문하는 금융 상품의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자문사가 지속가능성 위험이 그들의 투자 또는 보험 자문에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금융상품

금융 분야의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FDR은 EU 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 등을 증진 하는 금융상품(제8조 계약 전 공시에서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 축진의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제9조 계약 전 공시에 있어 지속가능한 투자의 투명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 공시, 웹사이트, 정기적인 공시를 통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특성 및 목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까지 금융시장 참여자가 제4조 및 제6조를 통해 하는 공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i) 금융 상품이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는지의 여부 및 그러한 경우,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 및

ii)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정기보고서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 이용할 수 있다는 보고

만일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의 정량화

를 포함하는 경우, 그 정보는 제4조(기업수준 공시)에 따라 채택된 규제 기술 표준의 규정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 참여자가 투자결정이 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 공시 내용에 각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결정이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제7조).

① 계약 전(前) 공시

가.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증진하는 경우

투자가 일어나는 기업이 모범적 지배구조 관행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이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나 그와 같은 특성의 조합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하여야만 한다.

i) 어떻게 이러한 특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보; 및

ii) 지수가 기준 벤치마크로 지정된 경우, 이 지수가 그러한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

이 때 금융시장 참여자는 지수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 내용에 담아야 한다.

나.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벤치마크로서 지표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i) 어떻게 지정된 지수가 그 목표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 및

ii) 그 목표에 부합되는 지정 지수가 왜 또 어떻게 넓은 시장 지수와 다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 등

만약 금융상품이 지속가능한 투자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준 벤치마크로 지정된 지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경우, 공개되는 정보에는 파리협정의 장기적 지구 온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배출량 노출의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³⁶⁾

② 웹사이트 공시 (제10조)

금융시장 참여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각 금융상품에 대해(계약 전 공시를 한 금융상품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정보 등은 웹사이트에 이를 공표하고 유지해야 한다.

i) 환경적·사회적 특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에 대한 설명;

ii) 금융 상품에 대해 선정된 환경적·사회적 특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의 영향을 평가, 측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론, 그 데이터 소스, 기초 자산에 대한 선별 기준과 금융상품의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영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관련 지속가능성 지표 등에 관한 정보;

iii) 제8조 및 제9조에 언급된 정보 (계약 전 공시에 포함된 정보); 및

iv) 제11조에 언급된 정보 (정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정보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단순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쉽게 접근 가능한 영역에 공표되어야 한다.

③ 정기보고서 공시 (제 11 조)

금융시장 참여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계약 전 공시가 된)

36) 다만, 벤치마크로 지정된 지수가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로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16/1011에 따른 EU 기후 변화 벤치마크 또는 EU-파리협정 일치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파리협정의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에 이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 및 환경적 특성을 촉진하는 금융상품은 해당 사회적, 환경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정기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그 금융상품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여 그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 또는 지수를 기준 벤치마크로 지정한 경우,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을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하여 지정 지수의 영향과 광범위한 시장 지수의 영향 간의 비교에 대한 설명을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금융시장 참여자는 지침 2013/34/EU(2013 EU 회계지침) 제19조에 따른 경영보고서의 정보 또는 같은 지침 제19a조(NFRD로 추가된 조항)에 따른 비재무보고의 정보를 적절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부연하여 규제기술표준안과 관련하여서는, SFDR에서는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유럽증권감독청(ESMA)으로 이루어진 ESA에게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제기술표준안을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 및 각 내용에 대한 기한은 다음과 같다.

i) 2020년 12월 30일까지 ESA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기후 및 여타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지표에 관련하여 이 조 제1항부터 5항에 언급된 정보의 내용, 방법론과 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 기술 표준안을 작성해야 한다. ESA는 관련될 경우 유럽환경청과 유럽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규제 기술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이 규정을 보충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다(제4조).

ii) 2021년 12월 30일까지 ESA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및 고용 사안, 인권존중,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사안에 있어 부정적 영향에 관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관련하여 정보의 내용, 방법론과 제시에 관하여 규제 기술 표준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른 규제 기술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이 규정을 보충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다(제4조).

iii) ESA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공시에서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 촉진하는 금융

상품의 경우 공개되는 정보의 제시 및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해야 한다.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할 때, ESA는 금융 상품의 다양한 유형, 그 특성 및 그것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시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단순하고 간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규제 기술 표준안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규제 기술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이 규정을 보충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다(제8조).

iv) ESA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계약 전 공시되는 정보의 제시 및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할 때, 금융 상품의 다양한 유형, 제1, 2, 3항에서 언급된 목적들과 그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시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단순하고 간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ESA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에 첫 번째 하위문단에서 언급된 규제 기술 표준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10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규제 기술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이 규정을 보충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다(제9조).

v) ESA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과 제시 요건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해야 한다. ESA가 이 항의 첫 번째 하위문단에서 언급된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할 때, 금융상품의 다양한 유형, 제1항에서 언급된 특성과 목표 및 상품들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ESA는 규제 및 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규제 기술 표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ESA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에 해당 규제 기술 표준안을 제출해야 한다. 규제 기술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이 규정을 보충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다(제10조).

vi) ESA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정기보고서에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과 제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해야 한다. ESA가 해당 규제 기술 표준안을 개발할 때, 금융 상품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및 목표 그리고 그들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ESA는 규제 및 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규제 기술 표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2020년 12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에 규제 기술 표준안을 제출해야 하며 규제 기술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이 규정을 보충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었다.

ESA는 2020년 4월에 발간한 컨설팅페이퍼(consultation paper)에 대해 165개 기관으로부터의 회신과 공개질의를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규제기술표준 초안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021년 2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C)에 전달하였다.³⁷⁾ SFDR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무공시 항목에 대해 기업, 국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분야로 나누어 총 18개의 의무공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초안의 내용은 <표 6>과 같다.³⁸⁾

<표 6> SFDR의 지속가능성 지표와 기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표		측정 기준
(1)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지표 - 기후 및 다른 환경 관련 지표		
온실가스 배출	①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 2023년 1월 1일부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②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③ 투자회사의 온실가스 집약도	투자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④ 화석연료 부문 기업들과의 연관성	화석연료 분야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⑤ 비재생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투자 대상 기업의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의 생산 점유율
	⑥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집약도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대비 에너지 소비량

37) 공경신, “유럽의 지속가능금융공시 최종보고서 및 기술표준 초안 주요 내용과 전망”, zoom in 2021-07호, 1면.

38) <표 6>은 SFDR의 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2021. 02. 02), Table 1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것임.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library/jc_2021_03_joint_esa_s_final_report_on_rts_under_sfdr.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60-82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표		측정 기준
생물다양성	⑦ 생물다양성에 민감한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생물다양성에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지역 근처에 투자 대상 기업의 활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물	⑧ 오염수 방출	투자 대상 기업의 폐수 방출량(투자액 100만 유로 당 배출량(ton), 가중평균 기준)
폐기물	⑨ 유해 폐기물 비율	투자액 100만 유로 당 투자 대상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폐기물 양(ton)
(1)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지표 - 사회·노동자, 인권, 부패 방지, 뇌물 방지 관련 지표		
사회·노동자	⑩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한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⑪ UNGC 원칙 및 OECD 지침 준수 모니터링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준수 여부 뿐 아니라 관련 문제점 및 불만 처리 구조 정책이 없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⑫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격차	투자 대상 기업의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격차
	⑬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투자 대상 기업 이사회 내 남녀 비율
	⑭ 논란이 되는 무기(대인지뢰, 화학무기, 상화화무기 등)에 대한 노출 정도	논란 가능성 있는 무기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2) 다른 국가 또는 초국가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지표		
환경	⑮ 투자대상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투자대상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사회	⑯ 국제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한 투자대상국의 비중	국제조약 및 협약, UN 원칙, 국가 법률에서 언급되는 사회적 위반에 해당하는 투자 대상국의 수
(3) 부동산 자산 관련 투자 지표		
화석연료	⑰ 화석연료와 부동산 자산의 연관성	화석연료 생산, 저장, 운송, 제조에 관련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에너지 효율	⑱ 비효율 에너지 부동산자산과의 연관성	에너지 효율이 낮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출처: 저자작성, 각주 38 참조

④ 공시사항의 검토 (제12조)

금융시장 참여자 및 자문사는 제3조, 제5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금융시장 참여자가 이러한 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그러한 변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공표해야 한다.

⑤ 관할당국 (제14조)

회원국들은 부문별 법률 그리고 지침 2013/36/EU에 따라 지정된 관할 당국이 금융 시장 참여자와 재무 자문이 이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관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른 기능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감독 및 조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제의 목적상, 관할 당국들은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는 목적에 적절한 정보를 부당한 지체 없이 상호 제공해야 한다.

⑥ 적용 예외 (제17조)

이 규정들은 IBIP와 관련하여 보험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인이나 자연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그들의 법률상 형태와 무관한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3명 미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IBIP와 관련한 보험 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인이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회사에 이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결정들을 위원회와 ESA에 통보해야 한다.

⑦ 보고 (제18조)

ESA는 자발적 공시의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ESA는 2022년 9월 10일까지, 그 후 매년, 집행위원회에 모범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발적 보고 기준에 관한 권고를 제시해야 한다. 이 연례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른 실사관행이 공시에 대해 갖는 함의를 고려해야 하고, 이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하며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⑧ 평가 (제19조)

위원회는 2022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500명 이상의 금융참여자들과 관련하여 평균 직원수에 대한 참조를 유지, 대체 또는 기타 기준과 병행해야 하는지를 고려하고, 관련 행정적 부담의 편익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투자대상자에 의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부족 또는 최적이지 아닌 (suboptimal) 데이터에 의해 이 규정의 기능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평가에는 적절한 경우 입법제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⑨ 효력발생 (제20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제4조제6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은 2019년 12월 29일부터,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전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제2절 미국의 E.S.G. 논의 동향과 특징

1. 미국 내에서의 E.S.G. 분야 공시 현황

(1) 환경(Environment) 관련 공시의 현황

환경과 관련하여 美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2010년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가이드라인(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³⁹⁾을 발표한 바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①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입법 및 규제 변경이 운영 및 재무 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본 지출 현황, ③ 기후 변화의 물리적 위험 등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EC는 2016년 발표한 성명(Comment Release: Business and Financial Disclosure Required by Regulation S-K)에서 국회로 하여금 ① 분쟁 광물, ② 자원 추출 기업이 외국 정부에 돈을 지불하는 것, ③ 광업 관련 시설의 보건 및 안전 위반 등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책적 우려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강조하였다.⁴⁰⁾ SEC는 향후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공시 요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공시가 투자자의 투표 및 투자 결정에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⁴¹⁾

(2) 사회(Social) 관련 공시의 현황

현재 SEC 규정 또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준은 상장기업에게 이사회 다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SEC는 2009년 기업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이사회 임명 위원회가

39) <https://www.sec.gov/rules/interp/2010/33-9106.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40) <https://www.sec.gov/rules/concept/2016/33-10064.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41) <https://www.sec.gov/rules/concept/2016/33-10064.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다양성을 고려하는지의 여부 및 그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⁴²⁾ 또한, SEC는 기업들이 위와 관련한 정책이 있다면 해당 정책의 추진 방식과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공개하도록 하였다.⁴³⁾

이와는 별도로 2019년에는 SEC는 이사 및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다양성 특성”이 공시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준수 및 공시 해석서(Compliance & Disclosure Interpretations 116.11 및 133.13)를 발표하기도 했다.⁴⁴⁾

(3)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공시의 현황

2009년 SEC는 다양성에 관한 공시 규정을 발표하면서, 그 밖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공시 규정 또한 발표하였다.⁴⁵⁾ 2009년 규정변경은 (i) 위험 관리와 보상 정책의 관계; (ii) 이사 및 이사 후보자의 배경 및 자격; (iii) 회사의 임원, 이사 및 이사 후보자와 관련된 소송; (iv) 이사회 구조 및 리스크 감독에서 이사회의 역할; (v) 회사 임원과 이사에 대한 주식 및 스톡 옵션 보상; 및 (vi) 보상 컨설턴트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⁴⁶⁾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공시 법제화 동향

미국의 경우 E.S.G.와 관련하여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제화하게 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E.S.G.와 관련하여 중요한 E.S.G.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몇몇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SEC는 이미 기업으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공시하도록 요구해 왔으며,⁴⁷⁾ 2021년 3월 무렵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E.S.G. 쟁점에 대하여 기

42) <https://www.sec.gov/news/press/2009/2009-268.htm>(마지막 방문: 2021. 7. 28.)

43) <https://www.sec.gov/news/press/2009/2009-268.htm>(마지막 방문: 2021. 7. 28.)

44) <https://www.sec.gov/divisions/corpfin/cfnew/cfnew0219.shtml>(마지막 방문: 2021. 7. 28.)

45) <https://www.sec.gov/rules/final/2009/33-9089.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46) <https://www.sec.gov/rules/final/2009/33-9089.pdf>(마지막 방문: 2021. 7. 28.)

47) Section 17(a)(2)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업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바 있어⁴⁸⁾ 올해 초만 하더라도 유럽에서와 같이 E.S.G. 관련 공시 의무를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 215-214로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를 통과시켜 그 내용과 효력, 향후 영향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 법안은 현재 상원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⁴⁹⁾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⁵⁰⁾

(1) 상장기업은 (연례 주주총회를 위한 자료 등에서) E.S.G. 지표와 기업의 장기 비즈니스 전략 간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E.S.G. 지표가 기업의 장기 비즈니스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모두 기술해야 한다.

(2) 美 SEC는 E.S.G. 지표를 정의해야 하며,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E.S.G. 지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 위 법안은 E.S.G. 지표가 상장기업의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중요(*de facto material*)”한 정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SEC 내부에서는 이러한 E.S.G. 지표 공시의 의무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SEC Commissioner 엘라드 로이즈만(Elad Roisman)은 SEC가 어떠한 E.S.G. 지표가 중요한지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 바 있으며, 특히 기후와 관련한 지표의 공시 의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⁵¹⁾ 따라서 미국의 경우 입법 과정 못지않게 담당 기관이 될 SEC의 향후 입장 또한 면밀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8)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42>(마지막 방문: 2021. 7. 28.)

49) H.R.1187 - 117th Congress (2021-2022):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50) Text H.R.1187 - 117th Congress (2021-2022):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51) SEC Commissioner Attacks Climate Change Disclosure Requirements, www.natlawreview.com

3. 미국 법률시장에서의 E.S.G. 논의 동향

한편 E.S.G.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로펌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활발한 움직임이다. 2021년 초부터 미국 내 로펌들은 본격적으로 E.S.G.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깁슨 던(Gibson Dunn),⁵²⁾ 오릭(Orrick)⁵³⁾, 세이파스(Seyfarth)⁵⁴⁾, 헌튼 앤드류스 쿠어스(Hunton Andrews Kurth) 등 대형 로펌이 E.S.G. 그룹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을 상대로 자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⁵⁵⁾

반면 E.S.G. 문제를 선도적으로 다루어온 대표적인 로펌으로서 왓치텔(Wachtell),⁵⁶⁾ 폴 웨이스(Paul Weiss),⁵⁷⁾ 프레시필즈(Freshfields),⁵⁸⁾ 애셔스트(Ashurst),⁵⁹⁾ 윈스턴 앤 스트론(Winston & Strawn)⁶⁰⁾ 등에서는 E.S.G. 소송을 대비한 움직임 보다는 기존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나 기업 자문 등에 초점을 두고 급변하는 시장과 사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법적 강제력 있는 E.S.G. 규정이나 공시의무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E.S.G. 공시 및 보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시장의 반응이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2) <https://www.gibsondunn.com/gibson-dunn-launches-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E.S.G.-practice/>(마지막 방문: 2021. 7. 28.)

53) <https://www.orrick.com/en/News/2021/02/Orrick-Adds-Leading-E.S.G.-Advisor-to-the-Tech-Sector-and-Beyond>(마지막 방문: 2021. 7. 28.)

54) <https://www.seyfarth.com/news-insights/seyfarth-launches-E.S.G.-corporate-citizenship-and-human-rights-group.html>(마지막 방문: 2021. 7. 28.)

55) <https://www.huntonak.com/en/news/hunton-announces-formation-of-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team.html>(마지막 방문: 2021. 7. 28.)

56) <https://www.wlrk.com/E.S.G.-memos/>(마지막 방문: 2021. 7. 28.)

57) <https://www.paulweiss.com/practices/sustainability-E.S.G./practice-overview/our-practice>(마지막 방문: 2021. 7. 28.)

58) <https://www.freshfields.com/en-gb/what-we-do/services/sustainability/>(마지막 방문: 2021. 7. 28.)

59) <https://www.ashurst.com/en/innovation/E.S.G.-ready/>(마지막 방문: 2021. 7. 28.)

60) <https://www.winston.com/en/thought-leadership/winston-and-strawn-launches-E.S.G.-advisory-team.html>(마지막 방문: 2021. 7. 28.)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국내 또는 유럽의 일부 국가와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확산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민간 영역에서의 CSR 담론을 중심으로 최근 CSV(공유가치 창출) 등을 통해 시장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부 관측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Benefit Corporation)을 회사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법제화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신(前信)으로서의 비콕(B-Corp)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른바 E.S.G.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었다.⁶¹⁾ 향후 미국에서의 E.S.G. 관련 논의는 결국 주주중심주의와 주주행동주의 간의 오랜 회사법적 논쟁의 재점화를 예상케 하며, E.S.G. 의무 위반에 의한 기업 가치 하락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법률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법률시장에도 유사한 형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61) 베네피트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과 관련하여서는 최유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II -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 한국법제연구원(2019) 참조.

제3장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 현황

제1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및 특징

제2절 국내 E.S.G. 평가 모형 및 특징

제3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의 시사점

제3장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 현황

제1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및 특징

1. 공시 현황

(1)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파악의 의의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정의한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는 물론 환경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뿐 아니라 물 사용량, 탄소배출 등 환경적 성과와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고용 등 사회적 성과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는 자발적 공시이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의 형태, 시기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진 재무보고와는 달리, 기업마다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형태, 시기, 및 공시 플랫폼 또한 다양하다. 이는 국내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3년 국내 최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에서 국내기업의 보고현황을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2010년대

초반까지에 한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폭발적으로 증대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최근 제기 되고 있는 E.S.G. 공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도별 공시 현황

아래 표와 그림은 연도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건수를 보고한다. 먼저 전체 공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3월까지 총 1,477건의 보고서가 공시되었다. 2002년 한국BASF가 최초로 '한국바스프 2001 사회적책임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시한 이후, 2014년까지 전체 보고서 공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5년부터는 공시 건수가 소폭 하락하다가 2019년에 136개의 기업이 공시하여 2014년의 140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107건의 공시에 그쳤다.⁶²⁾

상장법인⁶³⁾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 제시되었듯이 전체 공시 건수 중에서 상장법인의 공시비중이 평균적으로 49%로 나타난다. 전체상장법인 수 대비 공시 상장법인의 비중은 아래 표의 열(6)에 제시되었다. 2020년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장법인 총 2,144개 사(社) 중에 77개 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것(약 4.99%)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전체 상장법인 대비 공시 상장법인 비중은 전체 공시 건수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기간 평균으로는 전체 상장법인 중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이 5% 정도에 그친다.

아래 그림은 상장여부에 따른 연도별 추세를 보여주는데, 상장법인의 공시 건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비상장법인의 공시 건수는 2014년 7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의 공시 건수가 30건으로

62)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2021. 7. 6.)에서 선우희연 교수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7~18>과 <그림1~4>을 인용하였다.

63) 상장법인은 코스피(KOSPI)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 상장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총 공시 건수 731 중 코스닥(KOSDAQ) 상장법인의 공시 건수는 21건에 그쳐, 상장법인 통계는 코스피(KOSPI) 상장법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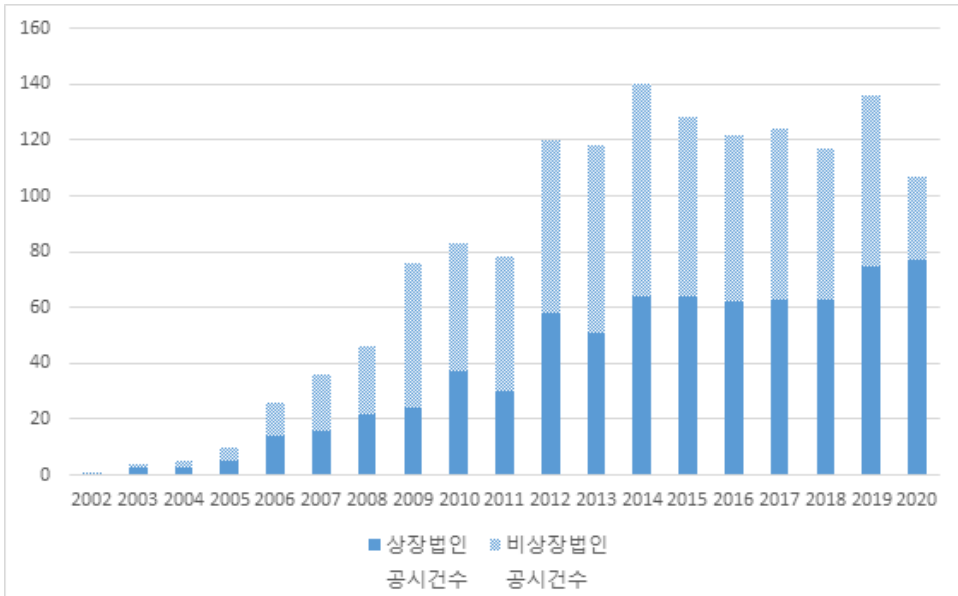
2019년 6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전체 공시 건수의 추세는 상장법인에 비해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는 비상장법인의 공시 건수가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공시 연도별 공시 건수

연도	공시건수 (1)	상장법인 공시건수 (2)	비상장법인 공시건수 (3)	공시 상장법인비중 (4)	전체상장법인 개수 (5)	전체상장법인중 공시법인비중 (6)
2002	1	0	1	0%	944	0.11%
2003	4	3	1	75%	998	0.40%
2004	5	3	2	60%	1,049	0.48%
2005	10	5	5	50%	1,116	0.90%
2006	26	14	12	54%	1,167	2.23%
2007	36	16	20	44%	1,236	2.91%
2008	46	22	24	48%	1,279	3.60%
2009	76	24	52	32%	1,338	5.68%
2010	83	37	46	45%	1,419	5.85%
2011	78	30	48	38%	1,500	5.20%
2012	120	58	62	48%	1,539	7.80%
2013	118	51	67	43%	1,597	7.39%
2014	140	64	76	46%	1,658	8.44%
2015	128	64	64	50%	1,753	7.30%
2016	122	62	60	51%	1,848	6.60%
2017	124	63	61	51%	1,929	6.43%
2018	117	63	54	54%	2,030	5.76%
2019	136	75	61	55%	2,111	6.44%
2020	107	77	30	72%	2,144	4.99%
총계	1477	731	746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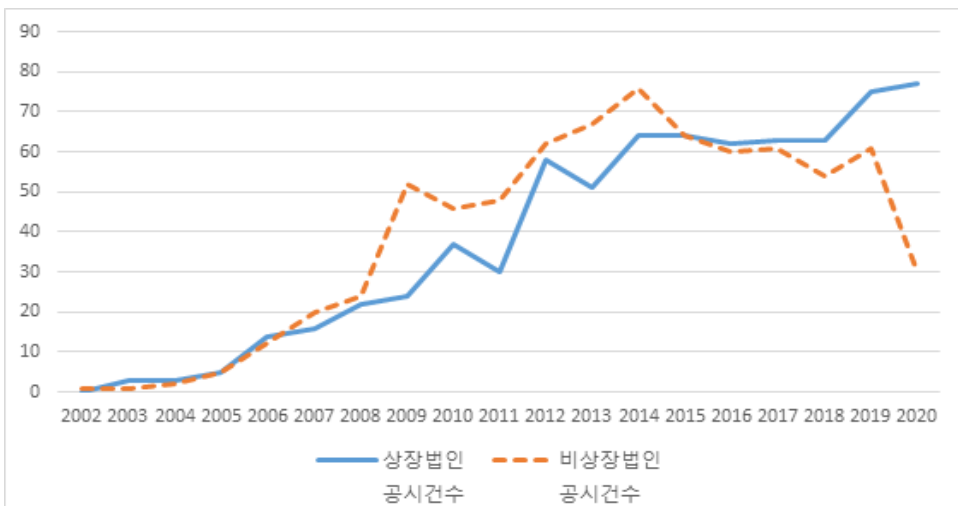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1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7-8면.

<그림1> 연도별 공시 건수 (상장법인 vs 비상장법인)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8면.

<그림2>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공시 건수 추세 비교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9면.

2. 공시 기업의 특징

(1) 산업 특징

1) 공시 기업 전체

아래 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별로 분류한 공시 건수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전체 공시 건수 중 제조업 종사 기업이 554건(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253건)⁶⁴⁾, 금융업(220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9건), 운수업과 건설업(각각 98건과 80건) 종사기업들이 뒤따른다. 아래 그림에서는 이러한 산업별 분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건수가 미미하던 초기 3년을 제외한 기간에서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공시 기업 중 제조업 기업 비중이 큰 것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⁶⁵⁾

<표 8> 산업별 공시 건수 (전체 공시)

연도	제조업 (1)	서비스업 (2)	금융업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운수업 (5)	건설업 (6)	기타 (7)	계 (8)
2002	1	0	0	0	0	0	0	1
2003	3	0	1	0	0	0	0	4
2004	4	0	1	0	0	0	0	5
2005	4	0	2	2	1	0	1	10
2006	13	2	2	6	2	0	1	26
2007	14	3	7	4	5	0	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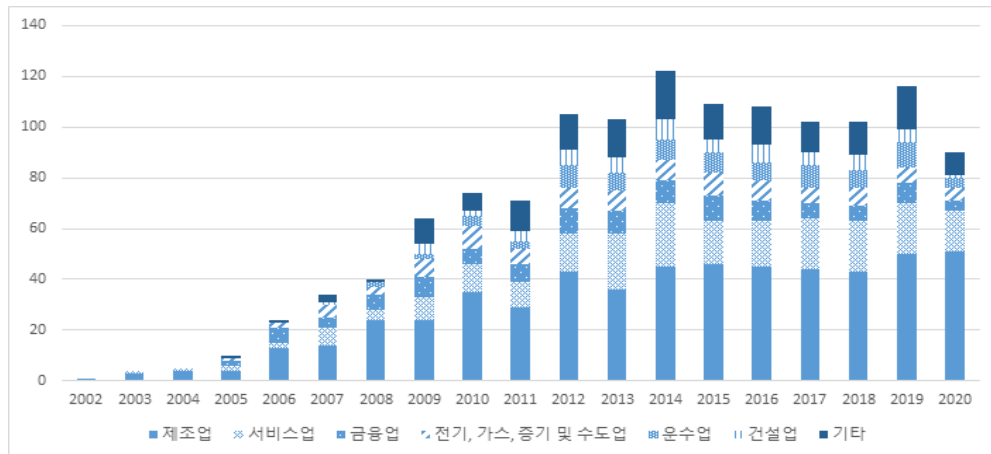
64)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대분류 J),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대분류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대분류 N), 교육서비스업(대분류 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분류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대분류 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분류 S)를 포함한다.

65) 표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기타 산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0건, 도소매업 44건, 부동산 및 임대업 30건,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20건,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타 산업 구성은 최근 연도로 올수록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연도	제조업 (1)	서비스업 (2)	금융업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운수업 (5)	건설업 (6)	기타 (7)	계 (8)
2008	24	6	4	6	3	2	1	46
2009	24	16	9	8	7	2	10	76
2010	35	11	11	6	9	4	7	83
2011	29	11	10	7	6	3	12	78
2012	43	21	15	10	8	9	14	120
2013	36	21	22	9	8	7	15	118
2014	45	26	25	9	8	8	19	140
2015	46	24	17	10	9	8	14	128
2016	45	21	18	8	8	7	15	122
2017	44	27	20	6	6	9	12	124
2018	43	21	20	6	7	7	13	117
2019	50	25	20	8	6	10	17	136
2020	51	18	16	4	5	4	9	107
총계 (비중)	554 (38%)	253 (17%)	220 (15%)	109 (7%)	98 (7%)	80 (5%)	163 (11%)	1,477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10-11면.

<그림3> 산업별 공시 비중 (전체 공시)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11면.

2) 공시 상장기업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시 현황 파악은 공시 환경의 제도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다음 표에서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공시 현황을 재차 살펴보았다. 상장법인은 총 731건의 공시 중 410건 즉, 약 56%가 제조업 소속 기업으로 전체 공시 현황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더 높다. 그러나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법인 중 약 64%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⁶⁶⁾ 제조 상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6%로 약간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비제조업 종사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교적 활발하게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을 뒤이어 서비스업 100건 (14%), 금융업 85건(12%), 운수업 42건(6%), 건설업 35건(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2건(4%), 기타 산업 27건(4%)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산업별 분포는 전체 공시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시 기간 전반에 걸쳐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왔다. 다만, 상장법인 중 기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어, 전체 공시 현황에서와는 달리 이들 산업에서의 공시 활성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66) 2020년 말 상장법인의 산업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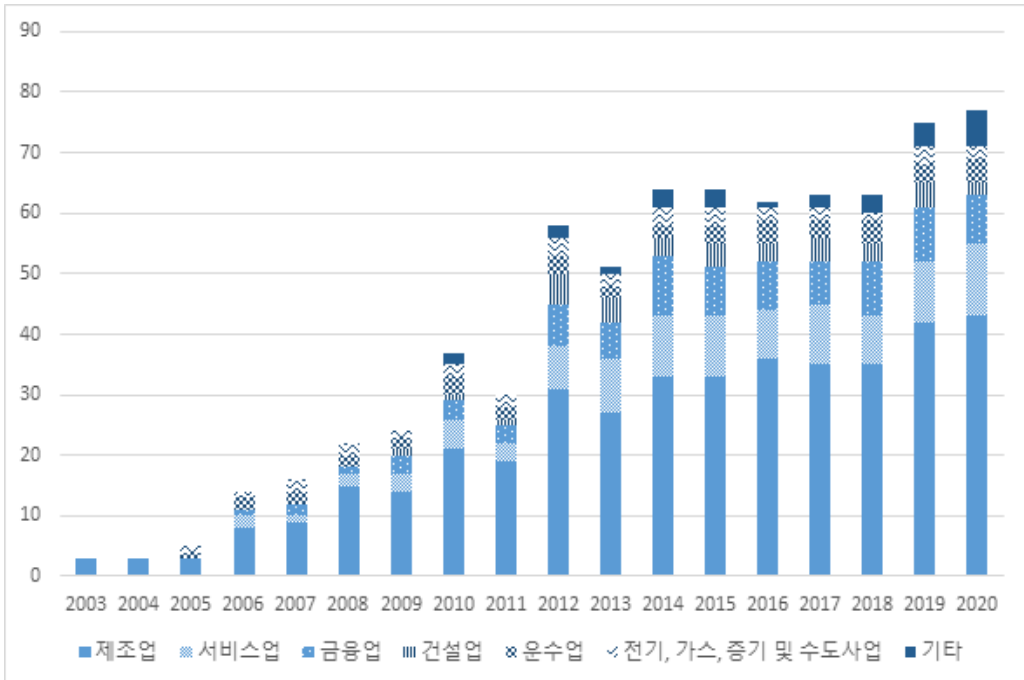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기타	계
기업 수	1,378	418	74	53	30	12	179	2,144
비중	64%	19%	3%	2%	1%	1%	8%	

<표 9> 산업별 공시 건수 (상장법인)

연도	제조업 (1)	서비스업 (2)	금융업 (3)	운수업 (4)	건설업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기타 (7)	계 (8)
2003	3	0	0	0	0	0	0	3
2004	3	0	0	0	0	0	0	3
2005	3	0	0	1	0	1	0	5
2006	8	2	1	2	0	1	0	14
2007	9	1	2	2	0	2	0	16
2008	15	2	1	2	0	2	0	22
2009	14	3	3	2	1	1	0	24
2010	21	5	3	3	1	2	2	37
2011	19	3	3	2	1	2	0	30
2012	31	7	7	3	5	3	2	58
2013	27	9	6	2	4	2	1	51
2014	33	10	10	2	3	3	3	64
2015	33	10	8	3	4	3	3	64
2016	36	8	8	4	3	2	1	62
2017	35	10	7	3	4	2	2	63
2018	35	8	9	4	3	1	3	63
2019	42	10	9	3	4	3	4	75
2020	43	12	8	4	2	2	6	77
총계 (비중)	410 (56%)	100 (14%)	85 (12%)	42 (6%)	35 (5%)	32 (4%)	27 (4%)	731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12-13면.

<그림4> 산업별 공시 비중 (상장법인)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1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14면.

(2) 재무적 특징

1) 공시 기업 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시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제한적으로 다루어왔다. 본 분석에서는 앞서 분석 대상이 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기업의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KIS-VALUE 및 Dataguide Pro에서 재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 이용된 공시 건수는 총 1,006건이며 이 중에서 상장기업의 공시 건수는 731건, 비상장기업의 공시 건수는 275건이다.

① 기업규모

아래 표는 연도별 공시 기업의 자산총계를 보여준다. 이 표의 제일 윗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통계량이, 그 아래로는 연도별 통계량이 나타나 있다.⁶⁷⁾ 열(1) 및 (2)에서는 전체 공시기업의 통계량을 보고하는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공시 기업의 자산총계는 평균 27조원으로 나타나며, 최근 연도로 올수록 평균적으로 공시기업들의 자산총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기간에 대한 자산총계 중위수는 9조원으로 평균보다 작은 수준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주로 공시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이들 대규모 기업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열(3) 및 (4)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균 자산총계는 약 32조원으로 열(5)에 나타난 비상장기업 평균 자산총계 15조원을 상회한다. 상장법인의 연도별 자산 총계는 전체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세와 비슷하게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연도별 자산 총계는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모두 자산총계 중위수는 평균보다 낮아, 두 그룹에서 모두 규모가 큰 기업의 공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11년 이전 기간에서는 평균적으로 상장법인보다 자산총계가 큰 비상장법인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상장법인의 공시 활동은 최근 10년 동안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67) 이와 같은 배열은 (2)재무적 특성에서 제시되는 모든 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10> 공시기업 자산총계 (단위: 십억원)

연도	공시기업 전체 (N=1,006)		공시 상장기업 (N=731)		공시 비상장기업 (N=275)	
	평균 (1)	중위수 (2)	평균 (3)	중위수 (4)	평균 (5)	중위수 (6)
전체기간	27,731	9,583	32,433	12,385	15,261	4,661
2002	1,143	1,143	-	-	1,143	1,143
2003	13,849	12,687	9,412	4,506	27,159	27,159
2004	20,646	21,144	17,590	18,407	29,812	29,812
2005	25,986	17,553	21,565	13,739	33,354	32,410
2006	15,051	9,397	19,990	14,279	7,369	3,708
2007	25,750	11,153	21,500	10,106	33,304	11,153
2008	14,154	7,942	15,072	9,146	11,631	4,007
2009	22,985	5,978	19,042	7,013	28,551	4,993
2010	17,231	5,719	15,004	9,095	21,569	4,715
2011	25,007	8,793	22,558	11,860	29,330	5,010
2012	25,905	11,130	29,605	13,396	13,983	5,189
2013	21,561	6,451	29,063	11,776	6,847	3,467
2014	28,967	11,481	37,121	17,102	8,094	4,746
2015	26,084	8,865	32,610	12,846	10,020	4,828
2016	30,664	11,089	36,580	15,039	12,326	4,871
2017	31,553	9,970	38,203	14,900	12,508	2,697
2018	32,638	10,020	38,483	15,087	12,182	4,747
2019	37,720	9,796	43,646	11,531	16,276	2,667
2020	33,209	9,202	36,748	10,130	15,039	4,908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16면.

② 매출액

다음 표는 연도별 공시 기업의 매출액 통계를 보여준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공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4조원이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7조 원 및 5조원으로, 공시하는 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4년도 정도까지는 공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 이후 기간에는 평균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다. 이러한 패턴은 상장법인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에서 비슷하게 관찰된다. 그러나 비상장 공시 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의 중위수는 기간과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작아, 자산총계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큰 기업이 전체 통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공시기업 매출액 (단위: 십억원)

연도	공시기업 전체 (N=1,006)		공시 상장기업 (N=731)		공시 비상장기업 (N=275)	
	평균 (1)	중위수 (2)	평균 (3)	중위수 (4)	평균 (5)	중위수 (6)
전체기간	14,312	5,995	17,621	9,288	5,538	2,897
2002	986	986	-	-	986	986
2003	10,573	8,086	10,233	4,579	11,594	11,594
2004	15,844	13,600	17,389	14,359	11,210	11,210
2005	10,935	9,336	13,574	15,258	6,537	7,311
2006	12,553	9,170	17,167	13,928	5,376	2,245
2007	10,349	5,559	12,711	6,819	6,149	1,587
2008	10,864	5,588	12,806	9,804	5,526	2,501
2009	10,690	4,066	11,600	4,093	9,404	4,066

연도	공시기업 전체 (N=1,006)		공시 상장기업 (N=731)		공시 비상장기업 (N=275)	
	평균 (1)	중위수 (2)	평균 (3)	중위수 (4)	평균 (5)	중위수 (6)
2010	11,218	4,405	13,538	5,920	6,700	3,923
2011	13,964	5,285	18,089	8,700	6,686	3,834
2012	15,601	6,816	18,587	10,500	5,978	4,247
2013	13,131	4,389	17,574	8,223	4,415	2,370
2014	16,123	7,737	20,618	10,664	4,616	2,262
2015	14,331	5,655	18,183	9,741	4,849	2,334
2016	14,595	6,157	17,775	9,802	4,736	2,942
2017	14,900	6,082	18,632	11,106	4,212	2,349
2018	16,060	6,440	19,193	8,076	5,096	3,755
2019	15,915	6,795	18,955	9,573	4,912	2,194
2020	15,297	6,020	17,108	7,350	6,004	4,480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17-18면.

2) 공시 상장기업

앞선 분석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공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공시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비공시기업을 비교군으로 하여 공시기업들이 규모와 매출액 측면에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석에서는 상장법인을 별도로 살펴본다.

① 기업규모

상장기업의 기업규모는 자산총계 및 시가총액 두 가지 지표로 분석하였다. 다음 표는 상장기업 전체(“전체 상장기업”)의 자산총계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상장기업(“공시 상장기업”) 및 보고하지 않는 상장기업(“비공시 상장기업”)의 자산총계 및 시가총계의 평균값을 비교한다. 먼저 자산총계를 살펴보면 2003-2020년 전체기간 및 연도별 통계에서는 공시 상장기업의 평균 자산총계가 비공시 상장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상장기업의 평균 자산총계는 약 2조원인데 반해(열(1)), 공시 상장기업의 평균 자산총계는 32조원으로(열(3)) 이 차이는, 전체 상장기업에서 공시 상장법인을 제외한 비공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자산총계의 평균을 산출했을 때(열(5)) 더 벌어진다. 기업규모를 시가총액으로 측정했을 경우에도 그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를 통해 기업규모가 매우 큰 상장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2> 공시여부에 따른 상장기업 기업규모 (단위: 십억원)

연도	전체 상장기업 (N=28,655)		공시 상장기업 (N=731)		비공시 상장기업 (N=27,924)	
	자산총계 (1)	시가총액 (2)	자산총계 (3)	시가총액 (4)	자산총계 (5)	시가총액 (6)
전체기간	2,181	719	32,433	12,177	1,388	419
2003	660	318	9,412	3,766	607	287
2004	684	344	17,590	10,328	561	294
2005	720	513	21,565	7,940	516	314
2006	781	532	19,990	18,261	477	351
2007	870	689	21,500	12,662	507	457
2008	1,018	441	15,072	12,996	774	295
2009	1,120	653	19,042	8,521	705	351
2010	1,978	783	15,004	11,013	1,450	441

연도	전체 상장기업 (N=28,655)		공시 상장기업 (N=731)		비공시 상장기업 (N=27,924)	
	자산총계 (1)	시가총액 (2)	자산총계 (3)	시가총액 (4)	자산총계 (5)	시가총액 (6)
2011	2,176	719	22,558	14,919	1,073	312
2012	2,494	773	29,605	11,878	1,398	331
2013	2,536	775	29,063	12,448	1,368	335
2014	2,686	773	37,121	12,274	1,485	357
2015	2,785	804	32,610	11,121	1,555	405
2016	2,868	798	36,580	11,686	1,611	383
2017	2,958	951	38,203	12,573	1,637	462
2018	3,036	763	38,483	15,003	1,576	392
2019	3,188	803	43,646	10,858	1,919	381
2020	3,597	1,095	36,748	11,924	3,593	1,095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25면.

② 매출액

상기 자산총계에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매출액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전체기간 및 연도별 통계에서 모두 공시 상장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비공시 상장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 구체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이 약 1조원인 반면, 공시 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약 18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2003년부터 2020년에 걸쳐 모든 연도마다 동일하게 관찰된다.

<표 13> 공시여부에 따른 상장기업 매출액 (단위: 십억원)

연도	전체 상장기업 (N=28,655)		공시 상장기업 (N=731)		비공시 상장기업 (N=27,924)	
	평균 (1)	중위수 (2)	평균 (3)	중위수 (4)	평균 (5)	중위수 (6)
전체기간	1,003	112	17,621	9,288	568	106
2003	484	70	10,233	4,579	432	69
2004	547	75	17,389	14,359	459	74
2005	545	77	13,574	15,258	366	76
2006	565	79	17,167	13,928	389	77
2007	597	81	12,711	6,819	365	79
2008	720	88	12,806	9,804	506	84
2009	770	87	11,600	4,093	412	83
2010	1,059	122	13,538	5,920	619	118
2011	1,180	131	18,089	8,700	565	126
2012	1,301	134	18,587	10,500	625	126
2013	1,264	131	17,574	8,223	564	123
2014	1,242	133	20,618	10,664	562	123
2015	1,181	125	18,183	9,741	572	121
2016	1,150	128	17,775	9,802	533	121
2017	1,194	135	18,632	11,106	547	125
2018	1,211	130	19,193	8,076	562	122
2019	1,187	129	18,955	9,573	580	122
2020	1,145	128	17,108	7,350	1,145	128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26-27면.

3) 공시 비상장기업

전체 상장기업에 이어 이번 분석에서는 비상장기업을 별도로 살펴본다.

① 기업규모

아래 표는 비상장기업 전체(“전체 비상장기업”)의 자산총계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비상장기업(“공시 비상장기업”) 및 보고하지 않는 비상장기업(“비공시 비상장기업”)의 자산총계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공시 비상장기업의 평균 자산총계는 15조원으로 전체 비상장기업의 평균 자산총계인 2,170억보다 매우 크다. 즉, 비상장기업 중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건수는 276건으로 그 숫자는 매우 작지만, 비상장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기업들이 공시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4> 공시여부에 따른 비상장기업 기업규모 (단위: 십억원)

연도	전체 비상장기업 (N=243,851)		공시 비상장기업 (N=275)		비공시 비상장기업 (N=243,576)	
	평균 (1)	중위수 (2)	평균 (3)	중위수 (4)	평균 (5)	중위수 (6)
전체기간	217	24	15,261	4,661	200	24
2002	212	18	1,143	1,143	206	18
2003	202	18	27,159	27,159	197	18
2004	194	18	29,812	29,812	189	18
2005	192	18	33,354	32,410	174	18
2006	204	19	7,369	3,708	164	19
2007	209	19	33,304	11,153	193	19
2008	236	22	11,631	4,007	187	22
2009	231	23	28,551	4,993	190	23
2010	220	25	21,569	4,715	176	25
2011	208	26	29,330	5,010	186	26

연도	전체 비상장기업 (N=243,851)		공시 비상장기업 (N=275)		비공시 비상장기업 (N=243,576)	
	평균 (1)	중위수 (2)	평균 (3)	중위수 (4)	평균 (5)	중위수 (6)
2012	205	26	13,983	5,189	186	26
2013	222	26	6,847	3,467	208	26
2014	218	26	8,094	4,746	200	26
2015	232	26	10,020	4,828	217	26
2016	224	26	12,326	4,871	209	26
2017	219	26	12,508	2,697	203	26
2018	213	26	12,182	4,747	202	26
2019	211	26	16,276	2,667	202	26
2020	228	26	15,039	4,908	228	26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Ⅰ)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32~33면.

② 매출액

상기 자산총계에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매출액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전체기간 및 연도별 통계에서 모두 공시 비상장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비공시 비상장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 구체적으로 전체 비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이 약 870억원인 반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비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연도별 통계량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된다.

<표 15> 공시여부에 따른 비상장기업 매출액 (단위: 십억원)

연도	전체 비상장기업 (N=243,851)		공시 비상장기업 (N=275)		비공시 비상장기업 (N=243,576)	
	평균 (1)	중위수 (2)	평균 (3)	중위수 (4)	평균 (5)	중위수 (6)
전체기간	87	23	5,538	2,897	80	23
2002	83	20	986	986	81	20
2003	83	21	11,594	11,594	81	21
2004	87	22	11,210	11,210	85	22
2005	85	22	6,537	7,311	79	22
2006	85	22	5,376	2,245	76	22
2007	87	22	6,149	1,587	79	22
2008	118	23	5,526	2,501	102	23
2009	106	24	9,404	4,066	94	24
2010	100	26	6,700	3,923	89	26
2011	97	27	6,686	3,834	87	27
2012	98	26	5,978	4,247	88	26
2013	94	25	4,415	2,370	87	25
2014	90	24	4,616	2,262	82	24
2015	84	23	4,849	2,334	79	23
2016	81	23	4,736	2,942	76	23
2017	82	22	4,212	2,349	77	22
2018	78	21	5,096	3,755	74	21
2019	76	21	4,912	2,194	72	21
2020	75	20	6,004	4,480	75	20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34면.

3. 공시보고서의 특징

(1) 작성기준

우리나라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시 여부는 물론, 그 내용 역시 기업마다 상이하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 및 기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참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침으로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tandard 및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SASB) Standard가 있다. 이들 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포괄적인 이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한편 여러 이슈들 중에 그 중요도에 대한 전세계적인 합의가 일찍부터 이루어진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시는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1) GRI Standard⁶⁸⁾

GRI Standard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환경, 및 사회적으로 미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력 및 그에 따른 기여도에 대한 조직의 공적인 보고 관례’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은 저마다 경제, 환경 및 사회에 미친 중요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GRI Standard는 이렇게 인식된 조직의 중요한 영향력을 전세계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비교가능한 형식으로 보고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의견을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68) ‘GRI 101: Foundation 2016’ 참조

GRI Standard은 고품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고 원칙 또한 제시한다. 보고 원칙은 보고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과 보고 품질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나뉜다. 보고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정의(Stakeholder Inclusiveness), 지속가능성의 정의(Sustainability Context), 중요성 (Materiality), 및 완전성(Completeness) 등의 보고원칙을 따라야 한다. 보고 품질과 관련된 원칙은 정확성(Accuracy), 균형성(Balance), 명료성(Clarity), 및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제시되었다.

GRI Standard는 크게 일반현황을 보고하는 GRI 102, 103과 특정 주제에 대한 보고 기준인 GRI 200, 300, 400으로 나뉜다. GRI 102는 조직의 프로필, 전략, 윤리성과 청렴성, 지배구조(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중요성 파악 및 보고서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정의하고, GRI 103는 경영접근방식을 보고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GRI 200, 300, 400은 각각 경제, 환경, 사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기준이다.

또한 GRI Standard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각 GRI 기준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보여주는 GRI Content Index를 제공하도록 한다(GRI 102). 이는 공시되는 보고서가 얼마나 GRI Standard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2) SASB Standard⁶⁹⁾

SASB Standard는 투자자를 주요 정보이용자로 정의하는데, 이는 GRI Standard는 정보의 이용 대상을 조직을 둘러싼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로 정의하는 것과 크게 구분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SASB Standard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도 재무성과와 중요하게 관계가 있는 사항을 공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재무성과와의 중요한 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시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공시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보고서에 보고하고 있는 정

69) 'SASB Conceptual Framework' 참조

보 및 GRI Standard와 같은 다른 지속가능보고체계 하에서도 생산되어야 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SASB Standard는 전통적인 재무보고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창출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계량적인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SASB Standard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10-K, 20-F, 및 40-F와 같은 자발적 공시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는데 참조할만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GRI Standard가 별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3) TCFD 권고안⁷⁰⁾

TCFD는 2015년 12월 결성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이다. 이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향후 기후변화 문제를 금융 부문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설립되었다. TCFD는 대부분의 G20 관할국에서 공개되는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개 정보는 표준화된 틀이 없어 각 기관의 공시자료를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핵심적인 재무적 영향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관련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에, TCFD는 2017년 6월 29일,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권고안 및 관련 지침(이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은 금융 시장 참여자가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적 위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관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사용된다.

본 권고안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정의하고 이러한 위험 및 기회가 어떠한 재무적 영향을 갖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주요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의 사례를 제공하여 공시자료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

70) ‘TCFD 최종보고서-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참조

시자료 작성자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 작성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TCFD 권고안

도표 4
권고안 및 뒷받침하는 권고 정보공개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을 공개합니다.	조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해당 정보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를 공개합니다.
권고 정보공개	권고 정보공개	권고 정보공개	권고 정보공개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을 설명합니다.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설명합니다.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공개합니다.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b)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합니다.
	c)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합니다.	c)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합니다.	c)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출처: TCFD 최종보고서 도표 4

이러한 정보공개 틀은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개 요구안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법규 하에서 제공하는 재무공시자료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국내 기업들이 공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사용된 작성 기준 현황

2019년과 2020년에 공시된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사용된 작성 기준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개년도 총 공시 243건 중에 약 92%에 달하는 223건의 공시가 GRI Standard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들 공시 중 4건을 제외한 219건의 보고서가 GRI content index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GRI standard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경영보고

서 중 19건의 보고서는 SASB standard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를 보고하는 SASB Index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TCFD 권고안에 따른 공시도 24건의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시는 2019-2020년 전체 공시건수 대비해서 미미한 수준이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시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 기업들도 보고서에 점차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6>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기준 현황

연도	총공시건수	보고서 작성기준		Index 공시		
		GRI Standard	미언급	GRI Index	SASB Index	TCFD Index
2019	136	124	11	121	2	2
2020	107	99	8	98	17	22
계	243	223	31	219	19	24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Ⅰ)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44면.

(2) 외부검증

1) 외부검증에 대한 요구⁷¹⁾

GRI Standard 102-56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external assurance)을 권고하고 있다. 외부검증은 보고서 및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의 품질에 대한 공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데, 정보를 생산하는 조직 내부의 제도 및 과정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검증은 성과의 정도나 품질에 대해 평가 및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외부검증인은 인증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집단 또는 개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외부검증인에게 기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71) GRI Standard 102-56 참조

- 외부검증인은 검증대상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완전한 의견 및 결론을 내린다.
- 외부검증인은 검증 대상 및 검증 업무에 명백히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 외부검증인은 검증 업무와 관련하여 품질관리절차를 취한다.
- 외부검증인은 체계적이고 문서화되었으며 증거에 기반한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검증인은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의 진실성을 고려하여 보고서가 관련 성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보고하는지를 평가한다.
- 외부검증인은 보고서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GRI Standard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였는지 평가한다.
- 외부검증인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검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에는 일련의 결론이나 의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자와 검증인의 의무에 대한 서술, 검증보고서가 전달하는 인증의 성격 및 수행된 업무의 요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내 기업들이 공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외부검증 현황

2019년과 2020년에 공시된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검증보고서 현황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개년도 총 공시 243건 중에 약 84%에 해당하는 203건의 공시가 제3자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였다. 이는 GRI Standard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총 223건의 공시 중에서는 91%에 해당한다. 외부검증인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많은 검증을 수행한 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이다. 그 위로 DNV GL 비즈니스 어슈어런스 코리아, 한국표준협회, 로이드인증원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들 외부검증인은 기술, 제품,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인증제공이 주요 비즈니스모델인 기업들이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 등의 대형회계법인은 2019-2020년 동안 총 7건의 검증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7>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부검증인 현황

연도	총 공시 건수	외부 검증	외부검증인					
			한국경영인증원	DNV GL	한국 표준협회	로이드 인증원	대형 회계법인	기타
2019	136	115	31	19	15	10	3	37
2020	107	88	35	16	8	7	4	18
계	243	203	66	35	23	17	7	55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46면.

이들 외부검증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기준 또는 자체 개발된 검증기준에 의거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2019년과 2020년 외부검증인이 사용한 검증기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해 외부검증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기준은 203건의 검증보고서 중 85%인 172건이 사용하고 있는 AA1000 Assurance Standard이다. AA1000 Assurance Standard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AccountAbility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공시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개발한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표준이다.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평가된다.⁷²⁾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기준은 총 34건의 외부보고서에서 쓰인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에서 제정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이다. ISAE 3000 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에 적용되는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증인이 자체 개발한 기준 또한 96건의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기준은 앞서 소개한 AA1000 Assurance Standard 또는 ISAE 3000과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⁷³⁾ 전체 외부검증보고서 중에 복수의 기준을 사용하여 검증한 건수는 112건으로 전체 건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72) 임팩트온,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기준 AA1000, 내년에 확 바뀐다, 2021. 1. 30., <https://www.impack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4>(마지막 방문: 2021. 7. 28.)

73) 자체개발한 검증기준만을 사용한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7건이다.

<표 18>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부검증기준 현황

연도	외부 검증	검증기준			
		AA1000 Assurance Standard	ISAE 3000	자체개발기준	복수의 기준 사용
2019	115	99	23	47	62
2020	88	73	11	49	50
계	203	172	34	96	112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47면.

제2절 국내 E.S.G. 평가 모형 및 특징

1. 국내 주요 E.S.G. 평가 모형 및 지표

기업의 E.S.G. 경영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E.S.G. 경영 성과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대상 기업의 E.S.G.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는 MSCI, Sustainalytics, RobecoSAM과 같은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오랜기간 국가별 다양한 기업들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평가기관의 평가지표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다보니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법제도 환경이나 기업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여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E.S.G. 평가는 기업의 공시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므로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은 2003년부터 실시하여 오던 기업지배구조(G) 평가모형에 더불어 사회(S), 환경(E) 평가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S.G. 평가결과는 우수기업 선정, 한국거래소(KRX)의 책임투자 지수 편입종목 선정에 활용되는 등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KCGS의 E.S.G. 평가모형 및 평가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1) KCGS 개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민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200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및 조사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KCGS는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SR) 대한 평가와 조사, 연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업무로는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평가,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연구 및 조사, E.S.G. 우수기업의 발굴 및 표창,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 등급 부여, 책임투자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 등이 있다. 책임투자 자문서비스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및 대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KCGS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사원기관으로 있다.

2) KCGS의 E.S.G. 모범규준과 E.S.G. 평가모형 개발

KCGS가 설립되기 이전에 각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지원을 받아 우리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1999년 9월에 제정하였다. 이후 2002년 동 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승계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KCGS에서는 설립이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결과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외에도 정책 개발, 지수 산출, 신상품 개발, 학문적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KCG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추세⁷⁴⁾에 부합하고 환경, 공급망,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부문의 모범규준 및 평가모형을 새로이 개발하여 “E.S.G. 평가모형”을 2010년에 완성하였다. 이러한 모범규준 및 통합평가모형 개발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환경·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마련하여 모범규준과 평가모형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KCGS에서 완성한 E.S.G. 통합평가모형 및 모범규준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E.S.G. 활동에 관한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을 위한 지침이 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한 정보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KCGS의 E.S.G. 평가모형 특성 및 활용

KCGS가 개발한 E.S.G. 통합평가모형 및 모범규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 모형의 중요한 특성으로는 국내 기업환경에 적합하게 평가문항을 구성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평가모형이라는 점이다.

74) 2010년 11월 1일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는 등 국제 기구도 CSR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KCGS는 한국거래소의 E.S.G. Leaders 지수⁷⁵⁾(E.S.G. Leaders 150, Governance Leaders 100, Eco Leaders 100,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산출을 위해 E.S.G.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E.S.G. 통합평가모형에 의한 평가결과는 상장기업에 대한 E.S.G. 활동을 촉진하고, CSR 우수기업 시상 및 등급부여, E.S.G. 관련 연구, SRI 관련 신상품 개발, CSR 및 SRI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4) KCGS의 E.S.G. 평가 소개

① KCGS의 E.S.G. 평가 프로세스

KCGS의 상장기업 E.S.G. 평가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⁷⁶⁾ 우선 매년 상반기에 당해연도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코스닥 150구성 종목,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이다. 평가대상기업 선정 이후,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자료, 지속가능성 보고서, 홈페이지, 정부기관 자료,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업의 E.S.G. 평가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75)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지수로 KRX E.S.G. Leaders 1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co Leaders 100,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코스피 200 E.S.G. 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76)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2021. 7. 6.)에서 KCGS 윤진수 본부장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19~42>과 <그림6~8>을 인용하였다.

<표 19> KCGS의 E.S.G. 평가기업 선정기준

평가 대상기업	평가 제외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코스닥 150 구성종목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상장 금융사 및 주요 비상장 금융사 책임투자 자문서비스 제공기관 요청회사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상장회사 해외 본사를 둔 외국회사 특수목적법인 등 페이퍼컴퍼니
KCGS 홈페이지 게시	미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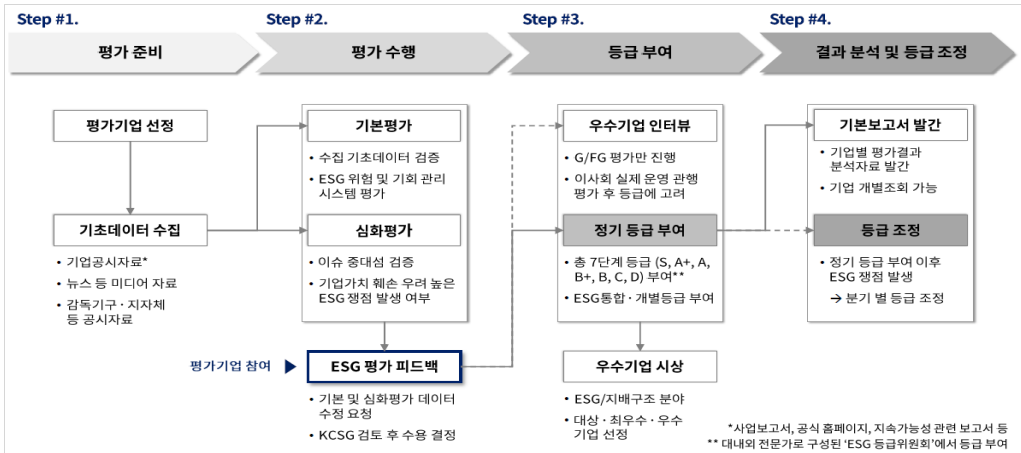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59면.

이후 수집된 기초데이터는 검증 절차를 거쳐 기본평가에 적용되고, 평가대상기업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심화평가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평가 전용 웹페이지에 업로드한다. 평가결과가 등록되면 평가대상 기업이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평가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KCGS 평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피드백 절차를 통해 각 기업은 수시로 평가문항과 결과를 확인·출력할 수 있으며 문항별 피드백을 웹상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가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KCGS와 기업 모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KCGS는 우선적으로 E.S.G. 각 부문에 대한 우수기업의 선정 및 표창, 등급부여, KRX 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체 평가대상 기업에게 당해기업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무상으로 보고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E.S.G.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KCGS의 설립취지에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매년 산출되는 평가결과는 DB로 저장 및 관리되어 E.S.G.와 책임투자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된다.⁷⁷⁾

77) 평가점수 결과는 FnGuide를 통해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6> KCGS의 E.S.G. 평가 절차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0면.

② KCGS의 E.S.G. 평가모형 소개

글로벌 평가기관들의 평가모형은 글로벌 시장의 기업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다보니 한국적 기업 문화와 법규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평가지표가 글로벌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국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저평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부 평가기관의 경우 설문방식을 통한 정성평가방식을 사용하여 산업간 특성을 반영하다보니 기업의 지속가능수준에 대한 정량화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KCG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E)과 사회(S) 부문의 평가모형을 새로 개발하면서, 기존의 있던 지배구조(G) 평가모형과 함께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통합 E.S.G. 평가모형’ 내에서 각 모형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모형구성,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등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기업지배구조 평가모형은 공식적인 국내 유일의 지배구조 평가모형이며, 지난 10여년 간의 평가에 대해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각 모형들의 구성과 배점 등에 대해서는 아래 표 3개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모형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되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표 20> KCGS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모형 구성

대분류(문항수)	중분류	배점	비율
주주권리보호(23)	1. 주주권리의 보호 및 행사 편의성	95	33.9
	2. 소유구조		
	3. 경영과실배분		
	4. 계열회사와의 거래		
이사회(33)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00	35.7
	2. 이사회 평가 및 보상		
	3.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기구(14)	1. 감사기구 구성	50	17.9
	2. 감사기구 운영		
공시(11)	3. 공시 일반	35	12.5
	4. 홈페이지 공시		
총계(68)		280	100%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1면.

KCGS의 환경평가 모형의 기본적인 모델은 'Business Process'로, 이는 기업이 환경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경영 활동을 모색하고 규정하는 체계이다. 이 모델에서는 환경전략과 계획, 관리적 실행, 평가 및 보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환경경영 관리 과정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동 평가모형에서는 기업의 환경경영이 기본적인 기업전략과 활동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환경성과는 환경적 지속성 및 경제적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분류 항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기업의 환경경영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분류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으로 구성되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 평가모형은 3개 대분류 및 13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9개의 감점지표를 도입하여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이슈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KCGS는 산업별 특성 뿐 아니라 지주회사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경우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자회사 관리가 주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개별 지주회사의 E.S.G. 경영 수준에 상장 자회사들의 환경점수를 가중평균하여 지주회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표 21> KCGS의 환경평가 모형 구성

대분류(문항수)*	중분류	배점			비율(%)		
		상	중	하	상	중	하
환경경영(27)	환경조직	98	89	56	55.7	58.5	60.9
	목표 및 계획수립						
	친환경공급망 관리						
	수자원/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환경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감사						
환경성과(19)	수자원/폐기물 관리	61	46	19	34.7	30.3	20.6
	기후변화						
	환경위험관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이해관계자 대응 (4)	환경보고	17	17	17	9.6	11.2	18.5
	이해관계자 대응						
총계(50)		176	152	93	100	100	100

주: 대분류 문항수는 환경민감도 '상' 기준임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2면.

다음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 평가모형은 3개 대분류 및 13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9개의 감점지표를 도입하여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이슈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표 22> 환경평가 주요 감점 문항

- 대기오염 법규에 대한 제재 여부
- 수질오염 법규에 대한 제재 여부
- 토양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3면.

한편, 환경평가에서는 업종 분류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KCGS의 환경평가모형에서는 KOSPI 200, DJSI Korea 등의 업종분류와 환경부, FTSE4 Good, UNEP 등의 환경영향 정도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기업을 20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상장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코스피(KOSPI) 200사의 환경경영 활동 분석결과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세부조정에 있어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른 KCGS의 환경평가 모형의 업종 분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었다.

<표 23> KCGS의 환경평가 모형의 업종분류

환경영향	상	중	하
업종	철강금속업	기기업	기타서비스업
	전력가스업	종이목재업	지주회사
	화학업	기타제조업	금융업
	전기전자업	운수창고업	유통업
	조선업	통신업	
	운수장비업	음료식품업	
	섬유의복업		
	의약품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건설업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3면.

사회평가 모형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에 대한 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동 평가모형에서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별로 고려해야하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정책수립(Plan)-실행(Do)-점검(See)’의 체계로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는 ISO 26000, GRI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과 국내 현황 및 법 체계 등을 비교하여 국내 시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로 선정되어 있다.

사회평가의 경우 환경평가와 동일하게, 개별 지주회사 평가시 상장 자회사의 사회적책임경영 수준을 가중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지주회사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표 24> KCGS의 사회평가 모형 구성

대분류(문항수)*	중분류	배점	비율(%)
근로자(19)	고용 및 근로조건	81	41.7
	노사관계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협력사 및 경쟁사(14)	공정거래	43	22.2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		
소비자(12)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44	22.7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와의 소통		
지역사회(7)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 공헌	26	13.4
	지역사회와의 소통		
총계(52)		194	100

주: 대분류 문항수 및 배점은 'B2C' 분류체계 기준임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4-65면.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평가 모형은 4개 대분류 및 14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2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감점지표를 마련하여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별 부정적 이슈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표 25> 사회평가 주요 감점 문항

- 부당해고 발생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
- 소비자 권익 침해 발생 및 관련 분쟁 발생 여부 등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5면.

③ KCGS의 E.S.G. 등급

KCGS는 E.S.G. 평가를 통해 산출된 점수를 기반으로 기업별 E.S.G.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E.S.G. 등급'은 상장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강·약점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의 정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KCGS의 E.S.G. 등급은 S, A+, A, B+, B, C, D의 7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개별등급과 E.S.G. 통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이때 기업지배구조(G) 우수기업군(A 등급 부여 예정기업)의 이사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 등급 부여의 결정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등급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E.S.G. 통합등급의 경우 평가대상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E.S.G. 개별등급 간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이를 통해 통합등급을 산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배구조(G) 등급의 비중이 E나 S 등급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표 26> KCGS의 E.S.G. 등급 명칭 및 의의

등급	위험 수준	의의
S	탁월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A+	매우 우수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A	우수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B+	양호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B	보통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C	취약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D	매우 취약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6면.

(2)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1) 서스틴베스트 개요

서스틴베스트(Sustinvest)는 2006년에 설립된 E.S.G. 전문 리서치 기관으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E.S.G. 분석과 책임투자 운용 전략을 자문하는 영리 기관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 평가모형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연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 운용 자문에 대한 E.S.G. 벤치마크 정보, 운용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E.S.G. 평가 모델 개발 및 데이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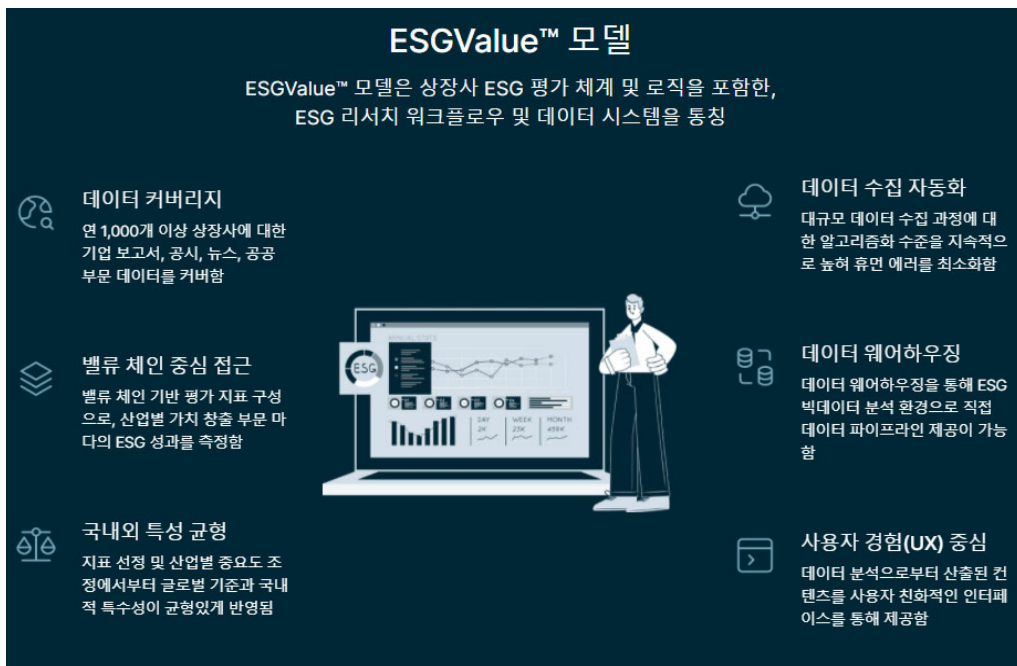
상품 전략 개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책임투자 이니셔티브인 UN PRI 서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 E.S.G.Value™ 모형 소개

서스틴베스트가 국내 상장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06년에 개발한 E.S.G. 평가모형인 E.S.G.Value™는 상장기업의 E.S.G. 평가체계 및 로직을 포함한 E.S.G. 리서치 워크플로우 및 데이터 시스템을 통칭한다.

E.S.G.Value™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반영하면서, 국내 E.S.G. 관련 정책,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된 평가모형이다.

<그림7>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모형 특징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9면.

동 평가모형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E.S.G.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위기 및 기회요인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여건에 따른 성과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3)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소개

①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프로세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3월말 기준으로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 종목 중 52주 평균 시총 기준으로 상위 800위 종목을 평가대상기업으로 선별하고, 고객사의 분석대상기업 종목 중 800사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추가로 당해연도 평가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기간 내 평가대상기업 중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으로 선정된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서스틴베스트는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연간 2회(6월과 11월) E.S.G.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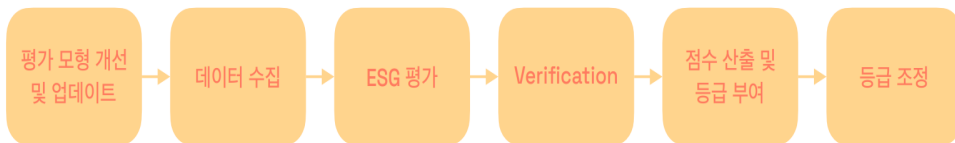
서스틴베스트는 당해연도 평가에 앞서 직전년도 평가에 대한 사후적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산업별 이슈 분석 등을 통해 평가모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기업 공시정보를 포함하여 기관별 인증 data 및 정부부처 정보공개시스템 등 공개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상반기 평가에서는 4월 이전에 입수가 가능한 사업보고서 등의 정보를 토대로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 하반기 평가에서는 10월 이전에 입수가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국내에서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체로 하반기에 발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본 평가는 하반기 평가로 볼 수 있다.

평가 정보는 공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E.S.G. 수준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와 컨트롤러시 평가를 모형에 반영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는 총수 일가가 소수지분으로 기업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에 대하여 평가하고, 컨트롤러시 평가는 평가기간 내 E.S.G. 이슈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사안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유사 사안의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평가와 사회평가에서는 컨트롤러시 평가를 반영하게 되며, 지배구조 평가에서는 컨트롤러시 평가와 함께 대규모 기업 집단 평가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피드백 리포트들 평가대상기업에 발송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오류 검증 및 미공개 정보를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를 토대로 E.S.G. 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그림8>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프로세스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71면.

②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모형 소개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모형은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지는 위계적 구조(hierarchy)를 지니고 있다. 평가모형 최상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Category(평가항목), KPI(평가지표), Data Point(세부지표) 순의 단계별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E.S.G.Value™ 모형은 다수 하부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고, 단계별 지표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상위지표의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즉, 세부지표인 Data Point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KPI 점수를 산출하고, KPI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Category 점수를 산출, Category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E.S.G.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E.S.G. 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E.S.G.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서스틴베스트의 환경평가 모형은 4개의 Category, 8개의 KPI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의 Data point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서스틴베스트 환경평가 기준

카테고리	KPI	평가 내용 및 기준
혁신 활동	친환경 혁신 역량	친환경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성과(특허, 인증 등)를 내고 있는가?
	환경성 개선 성과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성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생산공정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공정 관리	생산공정 내 투입물 절감 및 배출물 저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실제 성과가 있는가?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화학 물질 사용 및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검토)
	온실가스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CDP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있는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인가?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이 있는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실제 성과가 있는가?
공급망 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협력업체의 선정과 운영, 협력업체의 제품 관리에 있어서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고객관리	그린마케팅	제품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출처: 서스틴베스트,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 (주)서스틴베스트 기관자문팀(2020).

사회평가 모형의 경우 4개 Category 및 13개 KPI로 구성되어 있으며, 34개의 세부지표(Data Point)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평가모형의 경우 기업이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핵심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28> 서스틴베스트 사회평가 기준

카테고리	KPI	평가 내용 및 기준
인적자원 관리	근로조건	근로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고용평등 및 다양성	고용평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의 고용수준이 어떠한가?
	노사관계 관리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보건 및 안전까지 관리하고 있는가? 실제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가?
공급망 관리	공정거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상생협력	영세 하도급 업체의 성장 지원 등 상생협력 노력 여부?
	공급사슬관리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여부?
고객관리	고객정보보호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가?
	소비자 만족 경영	소비자의 불만을 수용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가?
	품질 관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가?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출처: 『E.S.G. 투자실무』, 금융투자교육원, 2021. 02.

서스틴베스트의 지배구조 평가 모형은 6개 Category 및 18개 KPI로 구성되어 있으며, 41개의 Data Point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 서스틴베스트 지배구조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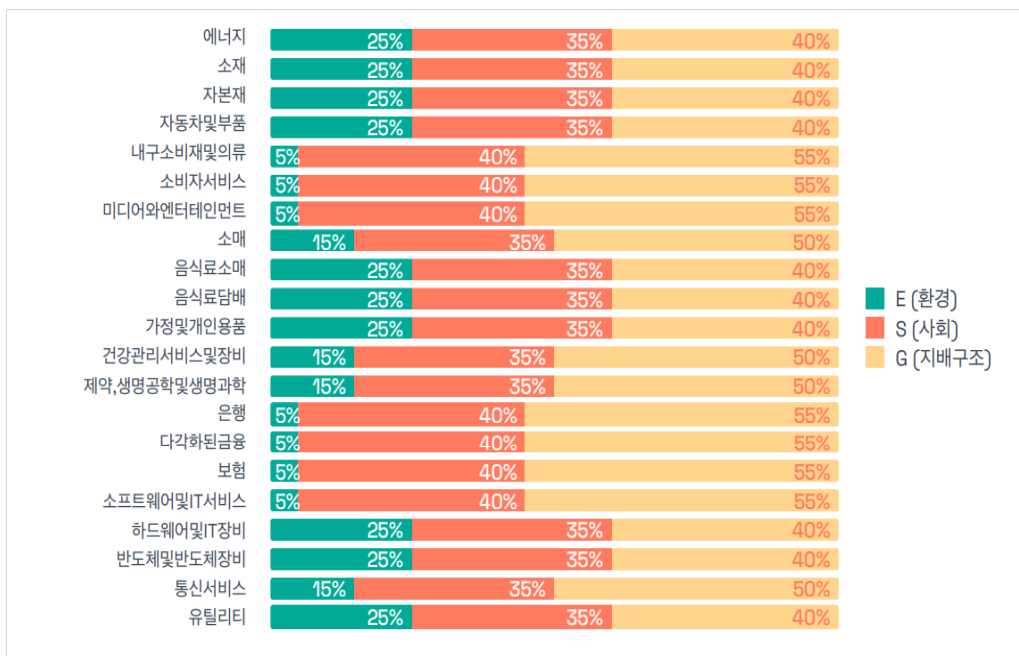
카테고리	KPI	평가 내용 및 기준
주주의 권리	경영권 보호장치	정관상 경영권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주주총회	주총 소집공고 공시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는가? 주주 친화적인 투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주주가치 환원	배당 등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정보의 투명성	공정공시	기업의 정보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공시 위반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가?
	회계 투명성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례나 회계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이사의 선임	이사 선임 방식과 이사 후보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가?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사회의 활동	이사회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확보되었는가?
이사의 보수	이사 보수의 적정성	이사의 보수가 경영성과와 이해관계자(주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이익배분 수준과 비교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었는가?
	보상위원회	보수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 위원회 구성상 독립성은 확보되었는가?
관계사 위험	관계사 우발채무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해 가치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관계사 거래	관계사에 대한 재무적 의존도(우발채무 및 매출매입 비중)가 지나치게 높진 않은가?
	내부거래 위반	실제 부당내부거래 실시 여부 및 내부거래 공시 위반 사례 여부?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의 이행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는가?
	지속가능경영 보고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의무를 투명하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윤리경영	윤리문제 예방을 위한 전사 윤리규범 및 프로그램 수립 여부?

출처: 『E.S.G. 투자실무』, 금융투자교육원, 2021. 02.

서스틴베스트는 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되, 그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산업별 특성과 각 지표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materiality)를 주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가 산업별 핵심 E.S.G.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산업별 리스크 노출도 수준은 어떠한지, 나아가 각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판단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S.G. 가중치는 전 산업에 걸쳐 지배구조 영역이 최소 40%에서 최대 55%로 환경과 사회 영역 대비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영역이 35%에서 최대 40%까지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다. 환경 영역의 경우 산업별 가중치가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설정되어 지배구조나 사회 영역에 비해 섹터 간 가중치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표 30> 서스틴베스트의 섹터별 E.S.G. 가중치



출처: 서스틴베스트,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 (주)서스틴베스트 기관자문팀(2020).

③ 서스틴베스트의 E.S.G. 등급

서스틴베스트는 E.S.G. 등급 산출을 위해 E.S.G. 규모별 점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이는 E.S.G. 평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여력이 있는 대규모기업들과 비교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받는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해 도입한 점수 산출 체계이다.

이를 위해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업을 3개 기업군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AA, A, BB, B, C, D, E의 7개 등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C 등급 이상을 투자가능종목, D와 E등급을 투자배제종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1> 서스틴베스트의 E.S.G. 등급 명칭 및 의의

등급	투자 가능 여부	의의
AA	↑ 투자 가능	E.S.G. 평가 최우수 종목
A		E.S.G. 평가 우수 종목
BB		E.S.G. 성과가 다소 우수한 종목
B		E.S.G. 성과 보통 종목
C		E.S.G. 성과 나쁨 종목
D	↑ 투자 배제	E.S.G. 성과 부진으로 투자 배제 고려 종목 채권단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종목
E		E.S.G. 성과 부진이나, 심각한 E.S.G. 문제 발생으로 인해 투자 배제가 고려되는 종목

출처: 서스틴베스트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평가대상기업이 특정 영역에서의 우수한 평가로 E.S.G. 전체 점수나 등급이 높게 산출되는 경우는 E.S.G. 전반에서의 관리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E.S.G. 등급이 AA 혹은 A등급이나 E.S.G. 영역 중 한 개 영역에서라도 D 혹은 E등급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기업에서 워크아웃, 법정관리,

상장적격성 심사 등 재무적으로 부정적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E.S.G. 등급을 E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때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의 기업에 대해서는 C 등급으로 하향조정하게 된다.

<표 32> 서스틴베스트의 연도별 E.S.G. 등급 분포 현황

등급	2018년	2019년	2020년
AA 등급	56사 (5.77%)	57사 (5.66%)	80사 (8.01%)
A 등급	137사 (14.11%)	139사 (13.80%)	164사 (16.42%)
BB 등급	310사 (31.93%)	283사 (28.10%)	288사 (28.83%)
B 등급	202사 (20.80%)	209사 (20.75%)	195사 (19.52%)
C 등급	190사 (19.57%)	241사 (23.98%)	198사 (19.82%)
D 등급	61사 (6.28%)	56사 (5.56%)	56사 (5.61%)
E 등급	15 (1.54%)	22사 (2.18%)	18사 (1.70%)
계	971사 (100.00%)	1,007사 (100.00%)	999사 (100.00%)

출처: 서스틴베스트,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 (주)서스틴베스트 기관자문팀(2020).

(3) 대신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는 1984년에 대신증권 계열사로 설립된 민간경제연구소로서, 지난 30여년간 자산배분, 경제·외환분석, 채권·원자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부터 E.S.G.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8년 동 연구소는 조직을 지배구조연구소와 금융공학연구소로 개편하고, 본 연구소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업무와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⁷⁸⁾

대신경제연구소도 다른 E.S.G. 평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E.S.G.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E.S.G.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대신경제연구소의 E.S.G. 평가모형 및 평가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78) <http://www.deri.co.kr/content/main> (마지막 방문: 2021. 7. 28.)

1) 대신경제연구소 개요

대신경제연구소는 상장사의 주주 권익과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및 지배구조 관련 연구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지배구조연구소와 금융공학연구소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연구소 내 Proxy 본부와 E.S.G. 본부, 법 제도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E.S.G. 평가와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인물 및 기업지배구조 DB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기관투자자 대상 주총 안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고 서비스,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및 지침을 제공하는 스투어드십 코드 제정 용역이다. 지난 2020년부터 국민연금의 E.S.G. 평가를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9> 대신경제연구소 사업영역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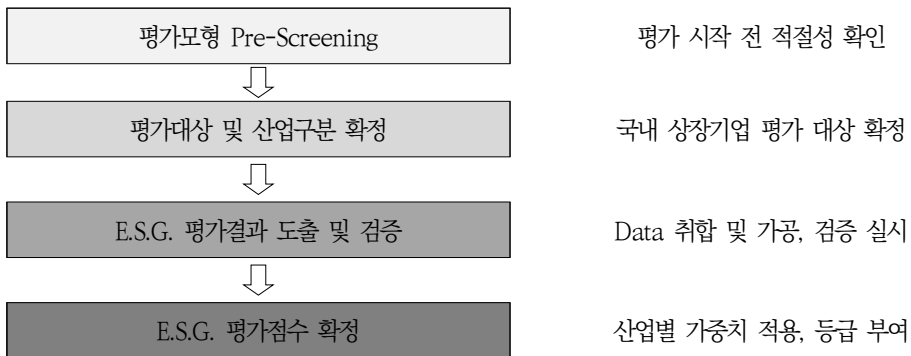
2) 대신경제연구소의 E.S.G. 평가 소개

① 대신경제연구소의 E.S.G. 평가 프로세스

대신경제연구소는 연 2회(상반기와 하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정기적으로 E.S.G. 평가문항에 대한 수정 및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평가모형의 적절성을 살펴보게 된다.

이 후, 당해연도 평가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동 연구소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피 150 편입기업, 그리고 고객 기관투자자의 평가요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REIT's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표 33> 대신 E.S.G. 평가 프로세스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는 E.S.G. 평가를 위해 다음 표과 같이 기업의 공시자료, 유관기관 자료, 미디어 자료 등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E.S.G. 전체적으로 약 70여개의 데이터 소스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평가를 위해 데이터 수집은 직접 수기 조서(Hand collecting)를 원칙으로 기초조사와 정량적 문항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진행은 기초조사 → 문항평가(정량) → 기업평가(정성) → 지배구조 등급산정(정성)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표 34> 대신 E.S.G. 평가를 위한 DB 출처

구분	DB출처
E.S.G. 공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미디어자료 등
Environment 30여개	환경부, 특정토양오염 위반사업장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법규 위반사업장
	PRTR 정보시스템, 유해물질배출량
	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 관리 수준
Social 20여개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사고 등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등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노사관계 등
	사회공헌, 대내외 이해관계자 대응 수준
Governance 20여개	홈페이지 공시, 배임 횡령 현황
	주주권리 보호 제도 및 성과
	지분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사회/감사위원회 현황, 책임성 및 독립성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② 대신경제연구원의 E.S.G. 평가 모형

대신경제연구소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정보 요구 또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실제적인 E.S.G.를 평가하여 주주, 투자자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E.S.G. 항목과 지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DJSI와 같은 주요 E.S.G. 평가 모형과 GRI 가이드라인, ISO 26000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E.S.G. 지표를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내 법규 검토 및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별된 E.S.G. 지표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입수 가능성 및 해당 기업 수 등을 확인하여 정량과 정성기준의 E.S.G. 평가 항목 및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표 35> 대신 E.S.G. 평가지표 구성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요 내용	참고 사항
1. 주요 E.S.G. 평가, 글로벌 이니셔티브 항목 및 지표 확인	① E.S.G. 평가대상선정 : GRI Standards, ISO 26000, CDP, DJSI ② 각 평가모델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항목 및 평가지표 확인	국내 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지배구조의 경우 특화된 항목과 지표를 설정 대신 E.S.G. 구성: E.S.G. 영역별 전략, 개별 활동 수준, 전년대비 성과, 부정적인 제재 검토 등의 구조로 평가가 이루어짐 E.S.G. 평가 지표 중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지표의 경우, 기업 간 차등을 줄 수 있는 정성적인 요소를 평가에 반영
↓		
2. 국내 법규 검토, 학술자료 검토	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평가 항목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 검토 -> 반영 ② 국내의 논문자료 검토를 통한 E.S.G. 평가항목과 지표의 타당성 확보	
↓		
3. E.S.G. 지표에 대한 입수 가능성, 해당 기업 수	① 선정된 지표의 데이터 입수 가능성 확인 (국가 통계 데이터, 제3기관의 공인된 정보, 기업의 자발적 공시 여부 등 데이터 취합 가능성) ② 각 평가지표별 해당 기업의 숫자 확인을 통해 국내 기업수준을 가늠하여 평가지표에 반영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마련(정량/정성적 기준)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의 E.S.G. 평가모형은 해외 주요 이니셔티브들의 지속가능 이슈 및 요구 사항, 글로벌 평가사들의 평가모형 구성 및 접근방법을 조사결과, 국내 각 섹터별 E.S.G. 관련 규제, 제도, 미디어 이슈 분석 등을 종합해 평가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평가문항 도출하였다.

환경평가 모형의 경우 환경경영 추진 체계 및 관리 여부, 친환경 경영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7개 주요 이슈와 1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60여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36> 대신 환경평가 항목

구분	총 60여 문항
환경경영 추진체계	1. 환경경영 방침 및 전략
	2. 환경조직 문화 구축
환경관리	3. 환경경영시스템
	4. 환경성과관리
	5. 친환경공급망 관리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	6. 환경정보 공개
	7. 생물다양성 보호 등
기후변화	8.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절감
	9. 대기오염
자원 효율화	10. 용수 사용
	11. 수질오염
	12. 폐기물 관리
환경위험 관리	13. 화학물질 배출 및 소송
친환경 제품 서비스	14. 친환경 제품 서비스 개발

출처: 『E.S.G. 투자실무』, 금융투자교육원, 2021. 02.

사회평가 모형의 경우 ISO 26000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주제(Subject) 중심으로 7가지 주요 이슈와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지표는 60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7> 대신 사회평가 항목

구분	총 60여 문항
제품/서비스 책임	1. 제품/서비스 안전
	2. 소비자 보호
공급망 관리	3. 공급업체 관리정책
	4. 동반성장
사회공헌	5. 사회공헌 활동
	6. 지역사회 지원
인적자원 관리	7. 성과 및 보상관리
	8. 근로복지 환경
	9. 노사문화
인권보호	10. 다양성 및 양성평등
	11. 인권정책
보건안전	12. 보건/안전 프로그램
정보보호	13.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예정)

출처: 『E.S.G. 투자실무』, 금융투자교육원, 2021. 02.

지배구조 평가모형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모형과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주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장치, 이사회와 독립성과 전문성, 내부통제장치인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경영투명성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총 10개의 항목과 80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8> 대신 지배구조평가 항목

구분	총 80여 문항
주주가치 권익보호	1. 주주가치
	2. 소유구조
	3. 계열사와의 거래
	4. 이익배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5. 이사회 구성 및 규정
	6. 이사회 운영성과
감사 및 내부통제	7. 감사기구
	8. 내부통제
경영투명성	9. 공시수준
	10. 윤리경영/반부패 (예정)

출처: 『E.S.G. 투자실무』, 금융투자교육원, 2021. 02.

대신경제연구소의 E.S.G. 평가모형은 E.S.G. 영역별로 '체계(시스템), 전략, 개별 활동 수준(KPIs), 전년대비 성과 수준, 부정적인 제제 확인' 등의 구조로 모든 평가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표 39> 대신 지배구조평가 항목

대분류	대분류	Factor / 문항
환경(E)	1) 환경경영 추진체계	환경방침 보유 / 환경경영 실무협의 채널 보유
	2) 환경관리	ISO14001 인증 보유
	3)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	CDP 협력
	4) 기후변화	에너지 데이터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공개 대기오염물질 공개 / 수질오염물질 공개

대분류	대분류	Factor / 문항
	5) 자원효율화	폐기물 종류별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
	6) 환경위험 관리	유해화학물질 공개 여부
사회(S)	1) 제품/서비스 책임	제품/서비스 안전 관련 제도, 프로그램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
	2) 공급망 관리	CP 도입여부
	3) 사회공헌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보유
	4)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개발 우수 및 가족친화기업 노사문화우수
	5) 인권보호	장애인 고용 우수 / 남녀 고용 평등 해외 인권기구 가입
	6) 보건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인증 산재다발 / 사망 등 산재사고
지배구조 (G)	1) 주주가치 권익보호	윤리규정 전문(원칙/강령/헌장) 존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 이익배당 결정
	2)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 사외이사 이사회 참여
	3) 감사 및 내부통제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종합의견 내부자 신고제도 / 신문고 존재
	4) 경영투명성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홈페이지 공시

출처: 『E.S.G. 투자실무』, 금융투자교육원, 2021. 02.

③ 산업별 가중치

대신경제연구소는 E.S.G. 평가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E.S.G. 관련 비즈니스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하기 위해 항목별 가중치 산정에 있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 가중치 산정에 있어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시장환경 및 제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점검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산업별 가중치 산정을 위해 고려하는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0> 산업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정량 및 정성 기준

구분	기준
정량적 기준	1) 산업별 통계 자료, 대신 다이제스트 모델의 수집된 자료 등 산업별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산업별 Exposure 계산 예시(환경)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업별 용수 사용량 등 예시(사회) :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 통계, 산업별 공산품 리콜 통계 2) 표준화 작업
정성적 기준	1) 산업별 전문가, E.S.G. 애널리스트의 정성적 리뷰 -> 산업별 특성, 산업 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2)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E.S.G. Materiality Map 반영 -> SASB의 산업별 중요 지표에 대한 시각 차이 반영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87면.

④ E.S.G. 컨트리버설 이슈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경영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와 관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컨트리버설 이슈로는 각종 제재 발생 내역, 미디어를 통한 컨트리버설 이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내 이슈에 대하여 시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는 E.S.G. 평가에서 조직, 정책, 목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컨트리버설 이슈를 반영함으로써 실효적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표 41> 대신 E.S.G. 영역별 컨트롤러버설 이슈

영역	예시	평가내용
환경(E)	대기오염	최근 3년 동안 에너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사고 및 이슈
	수질오염	최근 3년 동안 폐수, 용수 등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고 및 이슈
	폐기물 관리	최근 3년 동안 폐기물과 관련된 사고 및 이슈
	화학물질 배출 및 소송	최근 3년 동안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 및 이슈 최근 3년 동안 토양오염과 관련된 사고 및 이슈
	환경성과 관리	최근 3년 동안 기타 오염과 관련된 사고 및 이슈
사회(S)	제품/서비스 책임	최근 3년간 제품/서비스 안전 또는 고객과의 분쟁 등
	인적자원 관리	최근 3년간 노사분규, 대량해고, 부당해고 등 발생 내역
	인권보호	최근 3년간 성희롱, 차별 등 인권 관련한 이슈 발생 내역
	보건/안전	최근 3년간 산재(상해/사망사고 및 직업병)발생 및 산업안전 사고 발생
지배구조 (G)	주주가치보호	투자자들의 손실,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경영진의 자질 문제, 과징금 등
	소유구조	오너리스크, 오너의 과다겸직, 최대주주의 문제 등
	계열회사와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채무보증, 과도한 계열사 의존도 등
	이사회 운영	과도한 이사보수(한도), 횡령/배임 등
	감사기구	내부/외부감사, 감사의견 문제(적정의견 이외 감사의견), 국세청 또는 금감원 처분 등
	내부통제/투명성	윤리문제, 직원의 횡령/배임, 최대주주가 임명한 사자아의 문제, 절차/시스템의 문제, 기관주의 처분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의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88면.

2. 국내 주요 E.S.G. 평가 현황

KCGS는 정기평가에 따른 정기 등급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E.S.G. 이슈를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KCGS의 E.S.G.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매년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취약 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S.G.를 기업경영에 실효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E.S.G.가 취약한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이 E.S.G.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42> 2020년도 KCGS의 E.S.G. 정기 등급 부여 현황

등급	기업 수		비고
	2020	2019	
S	-	-	
A+	16 (2.1%)	8 (1.1%)	▲ 1%p
A	92 (12.1%)	50 (6.7%)	▲ 5.4%p
B+	134 (17.6%)	135 (18.1%)	▽ -0.5%p
B	260 (34.2%)	259 (34.7%)	▽ -0.5%p
C	236 (31.1%)	266 (35.7%)	▽ -4.6%p
D	22 (2.9%)	28 (3.8%)	▽ -0.9%p
계	760 (100.0%)	746 (100.0%)	

출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Ⅰ)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5.7.), 67면.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상위등급인 AA등급~BB등급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하위등급인 B등급~E등급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은 모두 감소하였다.

<표 43> 2020년도 서스틴베스트의 E.S.G. 정기 등급 부여 현황

등급	기업 수		비고
	2020	2019	
AA	80 (8.0%)	57 (5.7%)	▲ 2.3%p
A	164 (16.4%)	139 (13.8%)	▲ 2.6%p
BB	288 (28.8%)	283 (28.1%)	▲ 0.7%p
B	195 (19.5%)	209 (20.8%)	▽ -1.3%p
C	198 (19.8%)	241 (23.9%)	▽ -4.1%p
D	56 (5.6%)	56 (5.7%)	▽ -0.1%p
E	18 (1.8%)	22 (2.2%)	▽-0.4%p
계	999 (100.0%)	10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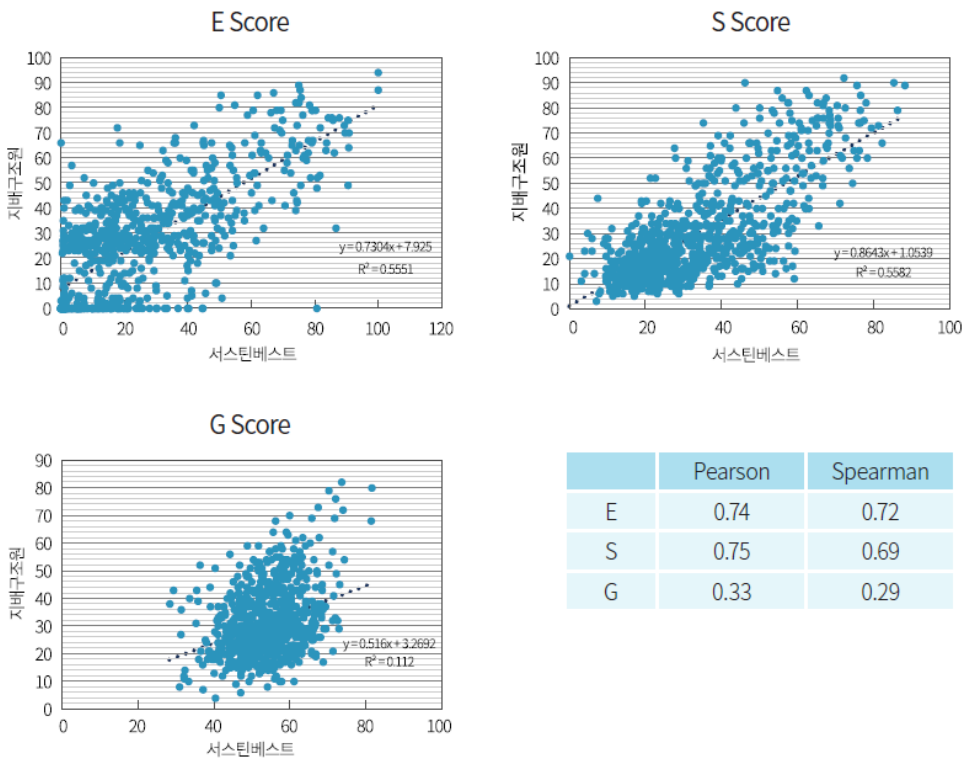
출처: 서스틴베스트,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 (주)서스틴베스트 기관자문팀(2020).

각 평가등급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E.S.G.에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존 E.S.G. 활동을 비교적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의 경우 더 우수해졌으나, 기존 E.S.G. 활동이 미흡했던 기업의 경우 더 미흡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E.S.G.가 확대 및 성장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KCGS와 서스틴베스트가 공통으로 평가한 기업들의 평가결과의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환경(E)의 경우 두 기관 모두 낮은 점수대의 기업 수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지배구조(G)의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S)의 경우 그 중간 정도

의 점수 분포를 보인다.79) 반면 환경(E)의 경우 두 평가기관의 의견이 일치하고, 지배구조(G)의 경우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평가기관 모두 환경의 평가 항목이 지배구조의 평가 항목보다 적으며, 환경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객관화가 가능한 평가지표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80)

<그림10> 평가기관의 E.S.G. 개별 점수 상관관계



주: 분포의 상이함과 극단값의 영향을 고려하여 순서통계량인 Spearman 상관계수도 포함하였다.

출처: 이인형(2021), E.S.G. 평가 체계 현황 및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79) 이인형,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이슈보고서), 2021, 7면.

80) 이인형,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이슈보고서), 2021, 7면.

제3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의 시사점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관련 시사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⁸¹⁾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왔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해야 한다. 현재 자발적 공시대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거래소에서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다가 2025년부터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를 확대하여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은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총계나 매출액 측면에서 매우 큰 기업들이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다양하고 그 수도 많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다. 또한 대규모 기업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우리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감당하기에 높은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기업에게 부담스럽더라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로 인한 효용의 크기가 발생 비용을 능가한다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작성에 기꺼이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점 또한 의미한다. 따라서 2025년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공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의무공시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

81) 본 내용은 제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도 한다.

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의 필요성 및 효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지속가능경영활동의 공시가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어, 기업이 창출하는 포괄적인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매우 오래전부터 의무공시가 도입된 재무정보공시와 관련해서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자본시장 및 실물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실증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시작할 점에 비추어볼 때(Breuer 2021), 의무공시의 정당화에 사용되는 논리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비슷한 정보의 공시의무의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대다수의 기업이 참조하고 있는 GRI standard는 일반 보고기준인 GRI 102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19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이미 공시가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중복되는 공시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기업의 공시비용부담을 줄이고 정보이용자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외부검증의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공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들은 GRI Standard에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외부검증기관의 인증보고서를 첨부한다. 거래소에서 제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에도 역시 외부검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의 외부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검증인의 유형이나 검증기준이 매우 폭넓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외부검증을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제는 검증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또한 환기한다. 즉, 외부검증의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검증기관의 적격성을 관리하는 규제 정책의 마련 및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비용에 대한 저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의 공시정보를 사업 보고서 공시정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외부검증이 필요 없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의무는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정교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E.S.G. 평가 관련 시사점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다양한 평가모형과 절차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투자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들이 대외공개하고 있는 E.S.G. 평가기준 들을 살펴보면, E.S.G.와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권고사항과 선진 E.S.G. 평가기관의 평가모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서스틴베스트의 경우는 평가 결과의 활용이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국내 E.S.G. 평가 모형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보 공개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E.S.G. 평가가 더 실효적으로 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공개 확대가 필수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E.S.G. 관련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때 평가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2절에서 국내 주요 E.S.G. 평가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E.S.G. 관련 공시 정보의 범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향상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E.S.G. 관련 공시 정보의 범위가 많을수록 평가자 간 이견이 노출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⁸²⁾ 이에 반드시 E.S.G. 정보 공시의 확대를 논의하기 보다는 비교가능성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82) Serafeim, Christensen, D., & G., Sikochi, A., "Why is corporate virtue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case of E.S.G. ratings",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Paper*(2019), pp. 20-84.

둘째,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E.S.G.를 향상 또는 개선하려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측면이 있다. E.S.G.의 정보 공개와 평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기업은 E.S.G.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E.S.G.와 관련된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역시 그 결과보다는 어떤 요인을 보완하고 향상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에서 보듯이 현재 E.S.G. 평가결과는 양극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히 E.S.G.에 대한 공시 지표의 평가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생각건대 E.S.G. 제도화에 있어서 각 지표의 확립, 측정 및 평가는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기 이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과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유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E.S.G. 공시 의무화 확대 현황과 쟁점

제1절 E.S.G. 정보공시 의무 확대 논의 현황

제2절 E.S.G.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제4장

E.S.G. 공시 의무화 확대 현황과 쟁점

제1절 E.S.G. 정보공시 의무 확대 논의 현황

1. 현행 E.S.G. 관련 공시 의무 현황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기존 E.S.G. 정보의 관련 공시 의무 현황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⁸³⁾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9년부터 일부 기업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 되었다. 공시 의무화의 배경으로는 자율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적다는 한계점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있었다. 다만, 기업들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3)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정리,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9년 1분기 Vol.7, 2019.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대규모법인(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로 신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를 요구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별표에 명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이관)
2. 기업지배구조 공시무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제29조제1호 및 제29조제2호의2)
 - (제재대상) (1)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경우, (2)거래소가 정정 요구하였음에도 정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제재수단)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의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 사항 등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제2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관련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를 포함하여 신고(제7조의2제1항 등)
* 기재사항에 거짓의 내용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필수 기재 사항 *을 거래소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2제2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 정정공시 요구와 관련한 중요사항 미기재 *의 판단 (제7조의2제3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미포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2. 자율공시 관련(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 *(제8조제7호의2 등)
* 자율공시 대상(대규모법인 제외) 명시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CoE(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미준수시 사유 설명)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가지 핵심원칙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핵심원칙별로 세부원칙, 세부지침 및 별첨 표 양식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44>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현황

구분	핵심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O	X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주: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출처: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개정 가이드라인(2020), 62면

(2) 환경 정보 공시 의무⁸⁴⁾

E.S.G. 관련 정보 중 환경정보는 이미 국내에서 일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환경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로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있고,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에서는 ‘녹색경영 정보 관련 사항’을 자율공시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1년 12월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1,100여개 기관에 대해 환경정보를 2012년 9월말까지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친환경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정보 데이터를 금융권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와 녹색인증기업은 2012년부터 정기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녹색경영 정보 관련 사항’을 자율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 153사와 녹색인증(녹색기술)을 받은 41사는 2012년부터 연간·분기 사업보고서 및 자율공시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되었다.

- 녹색기술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 취소 또는 확인 취소
-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관리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84) 박세연, “환경정보 공시 규제 현황”, 『CGS Report』 제2권 20호, 2021.11.

2.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1)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의 주요 내용과 구조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를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를 공개하였다. 해당 가이드선스는 정보공개의 필요성, 보고서 작성과 공개 절차,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글로벌 표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례와 함께 21개 지표 등 권고 공개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본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선스를 발간했으며, 국내에선 E.S.G.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사업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합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배경으로 기후변화와 책임투자의 확산, 글로벌 규제 강화를 지목하였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에서는 각 기업의 정보 공개에서 상위에 두어야 할 목적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TCFD의 정보 공개를 위한 기본 원칙을 인용하며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균형, 검증가능성, 적시성 6가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중요성(Materiality)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때, SASB와 GRI 원칙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중요성(Materiality) 개념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중요성 평가 절차의 예시로 P사와 S사의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이 중 P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1단계(20개 이슈 풀 선정)→2단계(내·외부 환경 분석⁸⁵)→3단계(이해관계자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 높은 순위에 따라 7개 중요이슈 선정)→4단계(경영진 보고를 통한 유효성 검토)의 과정으로 세분화 되어있다.⁸⁶

85) 외부환경 분석에는 글로벌지표, 미디어, 동종업계보고 벤치마킹, 전문가 설문 등이 있으며, 내부환경분석에는 경영 전략회의 및 회사운영회의의 안건 분석, 임직원 인식조사가 있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래소가 직접 선택한 권고공개지표 12개 항목과 21개 지표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환경부문 5개 항목(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사용, 물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위반·사고), 사회부문 4개 항목(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정보보안, 공정경쟁), 지배구조(거버넌스) 부문 3개 항목(경영진의 역할,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자 참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5>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권고 지표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 대응(1)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1)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1)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배출(3)	직접 배출량(Scope 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에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Scope 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3)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사용(1)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배출(1)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위반·사고(1)	환경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임직원현황(4)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 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86)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pp. 20~21, 2021. 1. 18.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3)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1)	공정경쟁·장지배적지위 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주: 지표는 연간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다른 경우 대상기간을 따로 밝힌다.
 출처: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pp. 30~31, 2021. 1. 18.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를 공개하였으며, 국민연금은 3가지 환경 이슈(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개발)와 5가지 사회 이슈(인적자원관리,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 안전, 공정경쟁) 그리고 5가지 지배구조 이슈(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배당)를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E.S.G. 정보 공개에 있어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E.S.G.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목표를 전사적 차원에서 다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E.S.G. 요소에 따른 각각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 이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E.S.G.를 다루기 위한 지배구조 확립과 관리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46>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 역할

E.S.G. 위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위험의 영향을 식별 ● 기존 위험 식별 프로세스의 E.S.G. 위험 식별 가능 여부를 평가 ● E.S.G. 위험 식별을 위한 다양한 정보원(source)을 고려 ● 위험 식별 절차의 가정을 확인 ●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에 E.S.G. 요소를 통합
--------------	--

E.S.G. 위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의 우선순위 평가 • 중대성 기준 적용 • 이사회의 E.S.G. 평가 역량 향상 • 중요 E.S.G. 위험 논의
E.S.G. 위험 관련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수립 시 중요 E.S.G. 위험 고려 • E.S.G. 위험 완화/적응 전략 이해 • E.S.G. 위험에 대한 경영진 책무 설정
E.S.G. 위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수준의 E.S.G. 위험 감독 공식화 • 위원회 간 E.S.G. 심의 협조
E.S.G. 위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역할 공개 • 주요 E.S.G. 위험 공개

출처: Ceres, 『Running the Risk』, 2019,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가이드, 2021.01.14. 재인용)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및 한국거래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드' 발표를 통해 E.S.G.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는 SDGs나 CSR 등 그간 활발하게 추진되고 제시되었던 유사한 목표들과 E.S.G.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며, 사회적 가치와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 특히 본 가이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각에 대한 주요 지표를 일부 추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업이 속한 수많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가이드의 법적 효과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 정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기업들이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특정한 기준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관한 제도화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E.S.G. 공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해 또는 인력의 부족 등으로 공시의 제도화 자체가 형해화 될 우려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원, 공시 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현재 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또는 사업보고서, 통합보고서) 상의 다양한 정보와 중복되는 공시의무, 나아가 정보제공의무를 교차 분석하여 이들 의무를 통합하

는 등 정리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⁸⁷⁾

(2) E.S.G. 정보공개 원칙에 관한 검토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2020.1. 기준)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균형, 검증가능성, 적시성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각각의 원칙에 입각하였을 때, E.S.G. 공시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각각의 요소 별로 정비하여야 할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⁸⁾ E.S.G. 정보공시의 제도적 측면에서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⁸⁹⁾

첫째, 공시 대상 정보의 정확성(Accuracy) 확보이다. 즉 E.S.G. 관련 정보의 취합과 작성 과정은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정보보고 범위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시 내용의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 ‘정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해당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확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칫 다양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 정보의 작성자나 보고서 작성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의 오류나 누락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⁹⁰⁾

둘째, 공개된 정보의 명확성(Clarity) 확보이다. E.S.G. 정보의 공개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업, 근로자와 소비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공존과 연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들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87)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 7.6.), 111면.

88) 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는 별도의 후속연구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최유경·이준서·박대환·이동훈,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 경제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2021, 발간예정) 참조.

89) 여기에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2021. 7.6.), 104-109면 및 김정욱 센터장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90) 각주 87 참조.

것이 타당하다. 이들 정보는 가급적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될 것을 요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개략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양하고,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균형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현재 제시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상 지표는 명확성 요소를 충족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의 명확성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가령 기업이 해당 지표의 연도별 증감 현황이나 그 이유,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방법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궁극적으로 지표의 측정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 또한 조직 부문에서 E.S.G. 대응, E.S.G. 평가, 이해관계자 등의 항목이나 ‘E.S.G 이슈의 파악, 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항목 등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⁹¹⁾

셋째, 공시 대상 정보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확보이다. 정보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지표의 산출 방법에 증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전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하도록 하고 그 세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E.S.G. 정보공시의 제도화는, 공시 대상이 되는 지표를 마련하는 과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와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중립적·객관적 관점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자칫 편향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K-E.S.G. 등과 같은 국내기준을 별도로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표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공통된 지표 항목에 대해 충실하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된 국제표준과 측정 방법에 숙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교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기업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기업 간 차이를 감안한 개별 지표의 설정 및 평가가 동시에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지표의 개발은

91) 각주 87 참조.

다양한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평가나 지표의 확립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 총체적으로 이를 제시할 수 있는 주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등의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실현가능할 것이다.⁹²⁾

넷째, 정보의 균형성(Balance) 확보이다. 정보의 균형이란,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가 조직 전반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 요구된다. 즉 정보공시에 있어서 기업에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이를 E.S.G. 관련 경영 보고서 등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기업이 부정적인 사항(지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적 고안을 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에 불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리한 정보조차도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구득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정보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³⁾

다섯째, 정보의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확보이다. 공시 대상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의, 수집 및 기록되어야 하며, 정보의 공개는 재무보고서와 유사한 내부통제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3의 검증기관이 객관적·독립적·전문적으로 검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검증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는 검증기관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결국 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부 정보의 공개, 평가 지표의 공개도 요구될 것이며, 검증 수준, 범위 및 과정 등이 보고서에 명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울러, E.S.G. 추구의 본질과 의의를 감안할 때, 그 평가나 측정을 반드시 독립적인 일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자칫 형식적인 E.S.G. 추구에 그치거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제도적 설계 과정에서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⁹⁴⁾

92) 각주 87 참조.

93) 각주 87 참조.

여섯째, 정보의 적시성(Timeliness) 확보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무보고서와 E.S.G. 정보의 공개 기간(주기)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무보고서 발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무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사항은 적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문제가 된 정보가 재무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자체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률의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으로 해당 사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어느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⁹⁵⁾

제2절 E.S.G.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실제 E.S.G. 정보공시의 주체는 기업인 만큼, 최근 E.S.G 공시 의무화 확대 흐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확대 흐름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국내 기업의 E.S.G 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슈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E.S.G. 공시 강화에 대한 해외 기업 의견

(1) 유럽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기업 의견

유럽에서도 과거 E.S.G. 정보 공시 의무화 필요성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유럽 대표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유럽(BusinessEurope)은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의 CSR활동을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94) 각주 87 참조.

95) 각주 87 참조.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BusinessEurope과 달리 유럽의 사회 책임투자포럼(Eurosif), 네덜란드 지배구조포럼(Eumedion),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CDSB(Climatur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등의 E.S.G. 관련 기관들은 EC가 제안한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 바 있다.⁹⁶⁾

최근에도 이러한 정보 공시 의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 추진⁹⁷⁾한 것에 대해 비즈니스 유럽(BusinessEurope)은 이번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무역협회⁹⁸⁾ 또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청기업이 모든 납품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⁹⁹⁾

(2) 미국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기업 의견

다음으로는, 제2장에서 언급된 미국의 E.S.G. 공시 법제화 흐름에 대한 미국 내 기업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14일까지 상장기업 기후변화 정보 공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대부분의 공개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10K(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담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S.G. 정보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96) 김선민,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지배구조원, CG 리뷰 VOL.70, (2013), 72-79면.

97) EU 의회는 2021년 1월 27일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고 EU 집행위원회는 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에 법률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가 제시한 입법 권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를 확인(identify), 보고(address), 개선(remedy)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98) 한국무역협회는 2021년 2월 8일 유럽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99) 이데일리, (2021), EU, E.S.G. 경영 의무화 추진에 무역협회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의견, 2021. 2. 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2166628948880&mediaCodeNo=257> (마지막 방문: 2021. 7. 28.)

마이크로 소프트는 “E.S.G.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것지만, SEC의 기후 공시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 또는 투표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¹⁰⁰⁾, 알파벳은 “E.S.G. 정보를 별도의 기후보고를 통해 SEC에 제공할것다”, “기후 공시가 불확실성을 포함한 추정 및 가정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¹⁰¹⁾

이후 미국 하원은 「2021년 기후 위험 공개법(Climate Risk Disclosure Act of 2021, HR 2570)」¹⁰²⁾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또한 반대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¹⁰³⁾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서한을 통해 “기업에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자발적인 시장 기반 공개를 옹호”한다고 밝혔으며, “자발적인 공개는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S&P 500 기업 중 90%가 2011년 20%에서 2020년에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을 근거로, “기업에 정보 공개에 대한 재량권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 의사 결정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 국내 기업 E.S.G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¹⁰⁴⁾

국내의 E.S.G. 정보 의무화 확대 흐름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E.S.G.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¹⁰⁵⁾는 입장과 이러한 의무 도입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¹⁰⁶⁾

100) Keith R. Dolliver, Vice President and Deputy General Counsel, Microsoft Corporation, Comment s on Climate Change Disclosures, 21. 6. 14

101) Alphabet Inc., Amazon.com Inc., Autodesk, Inc., eBay Inc., Facebook, Inc., Intel Corporation and Salesforce.com, Inc., Comments on Climate Change Disclosures, 21. 6. 11

102) 이 법안은 SEC가 다른 연방 기관의 기후 전문가와 협의하여 모든 공개 회사가 기후 관련 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2년 이내에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103) U.S. Chamber of Commerce, U.S. Chamber Letter on a Markup in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21.05.12 (<https://www.uschamber.com/letters-congress/us-chamber-letter-markup-the-house-financial-services-committee-2>)

104) 해당 내용은 국내 기업 E.S.G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Focus Group Interview(FGI)와 2021년 상반기 개최된 E.S.G. 공시에 대한 국내 여러 포럼 및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공시 법제화보다는 자본시장 변화와 경쟁에 의한 압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¹⁰⁷⁾는 반대의 목소리와 E.S.G. 공개·공시 제도의 개편은 필연적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¹⁰⁸⁾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E.S.G. 의무화 확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해보고자 국내 기업 E.S.G 담당자와 경제단체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¹⁰⁹⁾ FGI에서는 주요 질문 3가지를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의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과 한국거래소의 'E.S.G.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대한 의견 (적용 대상, 공시 내용 등)
- 2) 기업 입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에 대한 의견 (필요성 및 한계, 공시내용 중 자율공시와 강제공시가 필요한 부분)
- 3) E.S.G.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이에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이슈별로 기업 E.S.G 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1) 의무화 시기 및 대상

먼저,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E.S.G. 경영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공시가 강화되는 현재의 흐름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E.S.G. 공시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공시 강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지만 공시 의무화를 위한 환경

105) 동아닷컴, (2021), “중요 E.S.G. 정보, 사업보고서에 의무화해야”, 2021. 5. 2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26/107131471/1>, (마지막 방문: 2021. 7. 28.)

106) 아시아경제, (2021), “금융사 E.S.G. 투자 위해 기업 공시 의무화 속도내야”, 2021. 4. 30.,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3010505639212>, (마지막 방문: 2021. 7. 28.)

107) “E.S.G. 공시, 의무화보다는 자율적 공시 확대로”, 한국경제연구원, 19.12.11. 보도자료, 1면.

108) 산업일보, (2021), E.S.G. 정보공개...“의무화 필요하지만 기업부담 고려해야”, 2021. 5. 3., <https://www.kidd.co.kr/news/222096>, (마지막 방문: 2021. 7. 28.)

109) 구체적으로 SK SUPLEX 추구협의회, SK하이닉스, A 기업의 E.S.G. 담당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시 의무화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상황을 반영한 실행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실제 공시의 주체가 될 기업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¹¹⁰⁾

공시 의무화의 대상 또한,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공시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확대해야 하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매출액이 상당히 크다는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작은 규모 기업의 경우 정보 공시의 효익 뿐 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공시 내용

먼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가 제시하고 있는 21개 권고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제시된 권고 기준의 경우 실제 기업들이 관리하는 데이터 중 매우 일부분인데, 이 지표에 대한 정보공개가 실질적인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있다.¹¹¹⁾

다음으로, 정부가 E.S.G. 공시 기준을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준(TCFD, SASB 등)을 중심으로 E.S.G.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준과 국내 E.S.G. 공시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각각에 맞는 데이터를 관리, 구축해야 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E.S.G.도 산업별 특성이 존재하기에 단일 기준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10) 기업 E.S.G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요청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111) 기업 E.S.G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요청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E.S.G. 공시 제도화 전망

제5장

E.S.G. 공시 제도화 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를 계기로 전세계는 E.S.G. 관련 담론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시장의 존속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 개정 작업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하여금 E.S.G.에 관한 정보를 공시(公示)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EU 회원국들은 이를 국내법 체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코스피(KOSPI) 상장사의 경우 2026년부터 해당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며,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그 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E.S.G. 지표 정리가 아직까지는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의무를 부담하게 될 기업들은 기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자율 공시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대 초부터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추구를 강조해 왔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어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바 있다.¹¹²⁾ 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 가치

112) 최유경·김정옥, “기본법(基本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와 정량적 평가 방안”, 『법과 사회』 제67권(2021), 1-42면.

에 관한 담론은, 극히 일부 의식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시장(市場)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 평가 지표의 수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배점을 늘려 피평가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도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 제도화의 취지를 살린 실질적·구체적 사회적 가치 지표의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¹¹³⁾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영역에서의 E.S.G. 담론은,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설정된 방향이나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전히 E.S.G.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이해가 전제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E.S.G.와 관련한 제도적 설계는 본질적인 한계와 논쟁거리를 내재한 채로 다소 급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S.G. 정보공시가 제도화될 경우, 시장(市場)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전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E.S.G.의 정의나 개념이 SDGs, CSR, CSV,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유사 개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다양한 법률이 이미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의 준수(遵守)와 E.S.G. 추구가 어떤 차이를 야기하는지 여부는 정부를 비롯한 규제기관은 물론 산업계와 근로자, 소비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에게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E.S.G.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최소한 E.S.G. 공시가 제도화되는 추세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외면하기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따라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주요 회원국들에서 보이는 E.S.G. 정보공시 의무의 국내법적 수용 사례와 같이 우리의 경우 또한 국내 법체계 내에서 이를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에도 이미 약 50여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서 제출된 상태로 보인다.¹¹⁴⁾

113)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 지표(안)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최유경·김정욱,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20) 참조.

E.S.G. 정보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공시에 담길 내용이 될 것이다. 지금의 E.S.G. 논의는 단순히 국내적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많은 민간기업들은 해외투자기관으로부터 TCFD, SASB와 같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준용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별도로 독자적인 E.S.G. 공시에 대한 기준을 만들게 된다면, 그 지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한 국내 기업들은 E.S.G. 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 모두를 공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공시를 요구하는 국가나 주체 별로 각각의 기준들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업은 공시의 부담 속에서 오히려 E.S.G. 추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공시 기준의 내용을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지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며, 기업 간 E.S.G. 달성 결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커 보인다.

또한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E.S.G. 공시가 강화 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공시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E.S.G. 정보공시 의무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공시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효익이 정보의 생산 비용보다 커야 한다. 지금까지 E.S.G. 정보 생산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공시가 강화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신뢰성 없는 정보의 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E.S.G.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이에 효익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논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S.G.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적 성격을 나타내는 제도의 설계도 어느 정도 요구될 수 있겠지만, 보다 강력한 유인(인센티브)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 국내 E.S.G.는 대부분 E.S.G. 공시 등을 중심으로 규제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114) 다만 이들 50개의 법률개정안의 내용과 분류는 안수현, 『제21대 국회에서의 E.S.G.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1-19-⑥ (2021. 9. 발간예정)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사정은 해외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E.S.G. 제도화는 단순히 E.S.G. 공시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형식적 기본요건을 충족하는데 머무르기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인식한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요소를 창출하도록 하고, 확산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시의무 부과를 통한 이행의 점검이나 검증의 과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명확성, 비교가능성과 균형성, 그리고 검증가능성과 적시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동현·이재열·문명선·한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한울엠플러스(주)(2016).
- 김기섭,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회를 향한 생명의 경제운동』, 들녘(2018).
- 리베카 헨더스(임상훈 역), 『자본주의 대전환』, 어크로스(2021).
- 새뮤얼 보울스, 『도덕경제학』, 흐름 출판(2020).
- 알렉스 에드먼스(송정화 역), 『E.S.G. 파이코노믹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창출하는 전략』, 매일경제신문사(2021).
- 전광우 외,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세계경제연구원, (2021).

2. 학술논문

(1) 국내문헌

- 강원·정무권,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0), 681-707면.
- 강원·정무권, “비재무지표와 기업의 시장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E.S.G. 지표 개발에 사용되는 사건의 시장반응 분석”, 『연세경영연구』 제57권 제2호(2020), 1-22면.
- 강윤식·정재만, “E.S.G. 채권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1호(2020), 45-60면.
- 강현정·김보영·유순미, “E.S.G. 정보와 공매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제8권 제4호(2018), 197-205면.

- 김동영, “건전한 기업의 E.S.G. 평가정보와 KIS신용평점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 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2020), 131-155면.
- 김문준, “E.S.G.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A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리뷰』 제12권 제1호(2021), 17-40면.
- 김범석·민재형, “기업의 E.S.G. 노력과 재무성과의 선후형 관계: 탐색적 연구”, 『한국생산관리학회지』 제27권 제4호(2016), 513-538면.
- 김윤경, “기업 비재무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제29권 제1호(2020), 35-59면.
- 김은총·정한옥, “E.S.G. 등급을 활용한 팩터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2권 제4호(2020), 23-43면.
- 김창범, “E.S.G.를 반영한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제안”, 『기업경영연구』 제27권 제1호(2020), 19-32면.
- 나영·김명서·임옥빈, “E.S.G. 정보와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 478-503면
- 나영·임옥빈, “E.S.G.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6권 제4호(2011), 439-467면.
- 나영·임옥빈, “E.S.G. 정보와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 445-459면.
- 민재형·김범석, “기업의 E.S.G. 노력은 지속가능경영의 당위적 명제인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비재무적 책임 향상 노력의 차별적 효과”, 『경영과학』 제36권 제1호(2019), 17-35면.
- 민재형·김범석·하승인,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과 재무성과의 관계: 공유가치창출의 경험적 근거”, 『경영과학』 제32권 제1호(2015), 113-131면.
- 민재형·김범석·하승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인이 주가수익률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9권 제4호(2014), 33-49면.

- 박영규, “E.S.G.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9권 제4호(2017), 1951-1961면.
- 박채린·한중수·오명진, “불성실공시법인의 제재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 벌점의 제재금 대체부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9권 제1호(2020), 155-182면.
- 배창현·김태동, “불성실공시 법인의 공시위반제재금 대체 부과에 관한 연구”, 『회계와정책연구』 제25권 제3호(2020), 117-140면.
-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38권 제2호(2019), 1-40면.
- 안상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기업지배구조리뷰』 제68호(2013), 88-111면.
- 안태욱·이희승·이준서, “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E.S.G. 우려사안 키워드 도출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30권 제1호(2021), 123-149면.
- 오상희·이승태,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제17권 제2호(2019), 205-223면.
- 윤진수,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현황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리뷰』 제46호(2009), 70-86면.
- 이상원, “가격괴리율과 추적오차에 의한 E.S.G. ETF의 성과분석”,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6호(2020), 309-329면.
- 이정기·이재혁,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제23권 제2호(2020), 65-92면.
- 이정은·김진섭, “기업지배구조, 사회 및 환경평가지수와 기업가치의 관련성 분석”, 『회계와정책연구』 제18권 제4호(2013), 81-99면.
- 임옥빈,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S.G. 점수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86권(2019), 119-144면.
- 임옥빈·정준희·손여진, “경영자의 E.S.G. 활동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제22권 제2호(2019), 23-53면.

- 임종욱, “E.S.G. 평가정보 및 이익관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1호(2016), 111-139면.
- 임종욱, “E.S.G. 사회평가와 사회공헌활동비와의 관계”,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6호 (2018), 2017-2034면.
- 장승욱·김용현,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 『재무관리연구』 제30권 제1호(2013), 131-152면.
- 정도진·박성환·강평경·마성민, “국내 신(新)기업보고서 동향과 실태분석” 『회계저널』 제28권 제1호(2019), 239-258면.
- 조인호, “기업책임경영(RBC)과 E.S.G. 관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클레임 대응: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9권(2021), 261-283면.
- 차지아·김은·강흥구·김미숙,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E.S.G. 요소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1253-1255면.
- 최유경·김정욱, “기본법(基本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와 정량적 평가 방안”, 『법과 사회』 제67권(2021), 1-42면.

(2) 해외 문헌

- Breuer, M., “How Does Financial-Reporting Regulation Affect Industry- Wide Resource Alloc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59 No. 1(2021), pp. 59-110.
- Byun, Hae-Young, “Impact of E.S.G. Factors on Firm Value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Vol. 14 No. 5(2018), pp. 135-160.
- Poon, Goloshchapova, I., S-H., M. Pritchard, & P. Re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topic analysis and big data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Finance* Vol. 25(2019), pp. 1637-1654.
- Reed, D., “Stalking the elusive business case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World Resources Institute(2001).

- Serafeim, Christensen, D., & G., Sikochi, A., “Why is corporate virtue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case of E.S.G. ratings”,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Paper*(2019), pp. 20-84.
- Son, Sam-Ho, & Jeong-Hwan Lee, “Price Impact of E.S.G. Scores: Evidence from Korean Retail Firm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Vol. 17 No. 7(2019), pp. 55-63.
- Wee, Kyeong-Woo, Yun-Sik Kang, Jay M. Chung & Jaehyun Lee, “The Effect of E.S.G. Levels on Fund Performance and Cash Flows”,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 13 No. 2(2020), pp. 83-115.

3. 연구보고서

- 도연우·김승환, “The Effects of E.S.G. Ratings Information on the Excess Returns: Focused on the Short-term and Long-term Analysis”,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 발표논문집』 (2019), 1255-1282면.
- 손경우·주상철,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인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2015).
- 이은선·최유경,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1-19-④ (2021).
- 이인형,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이슈보고서), 2021.
- 이준호,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최유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II) -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 한국법제연구원(2019).
- 최유경·김정옥,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20).

4. 인터넷 사이트 및 기타 자료

(1) 보도자료

-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3.24.), 1-4면.
-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1.14.), 1-29면.
-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1.14.), 1-9면.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4.27.), 1-7면.
- “E.S.G. 공시, 의무화보다는 자율적 공시 확대로”,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19.12.11.). 1
면.
-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한국지배구조원 보도자료(2020.10.).

(2) 신문기사

- 박윤석, “[ZOOM UP : 한화건설 풍력사업 방점 둔 E.S.G. 경영 가속화 : 풍력사업실 신설... 육
· 해상풍력 속도 낸다_친환경에너지사업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 실현”, 『Electric
Power』 제15권 제2호(2021), 33면.
- 박윤석, “[ZOOM UP_SK E&S] 글로벌 메이저 친환경에너지 기업 도약 원년 삼는다 :
수소·재생에너지·에너지솔루션에 방점_E.S.G. 기반 ‘그린 포트폴리오’ 대전환”,
『Electric Power』 제15권 제1호(2021), 21면.
- 배상훈, “[ZOOM UP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개발 : 지난해 사회적 가치
5,926억원 창출_E.S.G. 연계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 수립”, 『Electric Pwer』 제15
권 제4호(2021), 59면.
- 편집부, “[EP NEWS] 한전, E.S.G. 기반 경영 강화를 위한 ‘제1차 E.S.G. 위원회’ 개최 외”,
『Electric Power』 제15권 제2호(2021), 78-85면.

(3) 인터넷 자료

- SASB 홈페이지: <https://www.sasb.org/>(마지막 방문: 2021. 7. 28.)
- Sustinvest 홈페이지 : www.sustinvest.com(마지막 방문: 2021. 7. 28.)
- U.S. Chamber of Commerce, U.S. Chamber Letter on a Markup in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2021. 5. <https://www.uschamber.com/letters-congress/us-chamber-letter-markup-the-house-financial-services-committee-2>(마지막 방문: 2021. 7. 28.)
- 대신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www.deri.co.kr(마지막 방문: 2021. 7. 28.)
- 동아닷컴, (2021), “중요 E.S.G. 정보, 사업보고서에 의무화해야”, 2021. 5. 2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26/107131471/1>(마지막 방문: 2021. 7. 28.)
- 법률신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2020. 5. 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380>(마지막 방문: 2021. 7. 28.)
- 산업일보, E.S.G. 정보공개...“의무화 필요하지만 기업부담 고려해야”(2021. 5. 03.), <https://www.kidd.co.kr/news/222096>(마지막 방문: 2021. 7. 28.)
- 아시아경제, (2021), “금융사 E.S.G. 투자 위해 기업 공시 의무화 속도내야”, 2021. 4. 30.,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3010505639212>(마지막 방문: 2021. 7. 28.)
- 이데일리, (2021), EU, E.S.G. 경영 의무화 추진에 무역협회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의견, 2021. 2. 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2166628948880&mediaCodeNo=257>(마지막 방문: 2021. 7. 28.)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 www.cgs.or.kr(마지막 방문: 2021. 7. 28.)

(4) 기타자료

- 금융투자교육원, 『E.S.G. 투자실무』, 금융투자교육원, 2021. 2.
- 김선민,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지배구조원, CG 리뷰 VOL.70(2013), 72-79면.

- 박세연, “환경정보 공시 규제 현황”, 『CGS Report』 제2권 20호(2021.11.)
-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201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정리”,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7(2019).
- 서스틴베스트,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 (주)서스틴베스트 기관자문팀(2020).
- 서스틴베스트, 『Investing in The Future』
-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개정 가이드라인』, 2020.
- 한국지배구조원, 『E.S.G. 평가 안내』, 2021.
- Alphabet Inc., Amazon.com Inc., Autodesk, Inc., eBay Inc., Facebook, Inc., Intel Corporation and Salesforce.com, Inc., Comments on Climate Change Disclosures, 2021.06.
- Ceres, Running the Risk: How Corporate Boards Can Overse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ssues, 2019. 11.
- GRI, GRI 101: Foundation 2016 (containing Standard Interpretation 1), 2016.10.
- GRI,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2016. 10.
- Keith R. Dolliver, Vice President and Deputy General Counsel, Microsoft Corporation, Comments on Climate Change Disclosures, 2021. 6.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최종보고서)」, 2017. 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록

부록1. [Directive 2013/34/EU]

부록2. EU 주요 회원국 별 NFRD 국내적 이행(transposition)

부록1 [Directive 2013/34/EU]**CHAPTER 1**

SCOPE, DEFINITIONS AND CATEGORIES OF UNDERTAKINGS AND GROUPS

Article 1 Scope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Categories of undertakings and groups

CHAPTER 2

GENERAL PROVISIONS AND PRINCIPLES

Article 4 General provisions

Article 5 General disclosure

Article 6 General financial reporting principles

Article 7 Alternative measurement basis of fixed assets at revalued amounts

Article 8 Alternative measurement basis of fair value

CHAPTER 3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ACCOUNT

Article 9 General provisions concerning the balance sheet and the profit and loss account

Article 10 Presentation of the balance sheet

Article 11 Alternative presentation of the balance shee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certain balance sheet items

Article 13 Presentation of the profit and loss account

CHAPTER 4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15 General provisions concerning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16 Content of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relating to all undertakings

Article 17 Additional disclosures for medium-sized and large undertakings and public-interest entities

Article 18 Additional disclosures for large undertakings and public-interest entities

CHAPTER 5 MANAGEMENT REPORT

Article 19 Contents of the management report

Article 19a non-financial statement (*신설)

Article 20 Corporate governance statement

CHAPTER 6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S

Article 21 Scope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s

Article 22 The requirement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23 Exemptions from consolidation

Article 24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25 Business combinations within a group

Article 26 Proportional consolidation

Article 27 Equity accounting of associated undertakings

Article 28 The note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29 The consolidated management report

Article 29a Consolidated Non-Financial Statement (*신설)

CHAPTER 7 PUBLICATION

Article 30 General publication requirement

Article 31 Simplific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undertakings

Article 32 Other publication requirements

Article 33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drawing up and publishing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management report

CHAPTER 8 AUDITING

Article 34 General requirement

Article 35 Amendment of Directive 2006/43/EC as regards the audit report

CHAPTER 9 PROVISIONS CONCERNING EXEMPTIONS AND RESTRICTIONS ON EXEMPTIONS

Article 36 Exemptions for micro-undertakings

Article 37 Exemption for subsidiary undertakings

Article 38 Undertakings which are members having unlimited liability of other undertakings

Article 39 Profit and loss account exemption for parent undertakings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40 Restriction of exemptions for public-interest entities

CHAPTER 10 REPORT ON PAYMENTS TO GOVERNMENTS

Article 41 Definitions relating to reporting on payments to governments

Article 42 Undertakings required to report on payments to governments

Article 43 Content of the report

Article 44 Consolidated report on payments to governments

Article 45 Publication

Article 46 Equivalence criteria

Article 47 Application of equivalence criteria

Article 48 Review

CHAPTER 11 FINAL PROVISIONS

Article 49 Exercise of delegated powers

Article 50 Committee procedure

Article 51 Penalties

Article 52 Repeal of Directives 78/660/EEC and 83/349/EEC

Article 53 Transposition

Article 54 Entry into force

Article 55 Addressees

부록2 EU 주요 회원국 별 NFRD 국내적 이행(transposition)

프랑스



(Amendments to the Law on Account PZE No. 51)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 공익실체
 - 상장 기업(Listed companies)
 -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
 - 보험 회사(Insurance Providers)
- 비상장 유한책임회사와 비상장 투자 펀드의 경우 그들의 순 매출이 1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

(2) 보고 특징

-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3) 보고 형식 및 기간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이내의 연차보고서
- 이 연차보고서는 웹사이트에 5년 동안 공개되어야 함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 가능(may rely upon)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다양성 진술서 (Diversity statement)
- 감사인 검증: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순매출 1억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1억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 검증을 요구
- 벌금: 이해 관계자가 비재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후속적으로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독 일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 공익실체
 -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
 - 보험 회사(Insurance undertakings)
 - 자본시장 지향적 유한 책임 회사 또는 협동 조합의 법적 형태의 회사

(2) 보고 특징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연차보고서 또는
- 회계연도 종료일 후 4개월 이내의 별도 보고서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 가능(may rely upon)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
- 다양성 진술서(Diversity statement): 대형 상장 주식회사에 적용
- 감사인 검증: 문서의 존재 여부(Presence of statement) -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
- 벌금: 다음 중 가장 높은 금액 - 1천만 유로 또는 회사 전체 연간 매출의 5% 또는 위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2배

이탈리아

(Legislative Decree 30 December 2016, n. 254)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 공익실체
 - 상장 기업(Listed companies)
 - 은행 (Banks)
 - 보험 그리고 재보험 회사(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2) 보고 특징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연차(경영)보고서, 또는
- 별도 보고서: 회계연도 기한 내에 관리 기관이 승인하고 감독 기관과 감사인이 처분할 수 있는 별도의 보고서로 회사 등록부 및 연차(경영) 보고서와 함께 게시됨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 가능(may rely upon);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 혼합 보고 방식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
- 다양성 진술서 (Diversity statement)
- 감사인 검증: 문서의 존재 여부 및 내용(Presence and content of statement)
- 벌금: 관련 정보 누락, 미준수 또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만~ 15만 유로의 제재가 적용됨

스 페 인

(Anteproyecto de Ley sobre información no financiera y diversidad (Based on draft law - Spain has not official transposed the Directive 2014/95/EU))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 공익실체
 - 상장 기업(Listed companies)
 -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
 - 보험 회사(Insurance undertakings)
 - 결제서비스 회사 및 전자화폐 회사(Payment and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 2년 연속 매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0,000명 이상인 연기금(Pension funds)
 - 5,000명 이상의 고객 또는 5,0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투자 서비스 및 집합 투자 기관
- 2년 연속 매해 결산일 기준 순매출액이 20억 유로를 초과하고 직원이 4,000명 이상인 기업

(2) 보고 특징

-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 재무제표 내용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표시된 금액에 대한 설명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연차보고서 또는
- 연차보고서와 함께 발행되는 별도 보고서
- 통합경영보고서('적용대상 기업' 기준 2년 연속 초과 시)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
- 명시적으로 언급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음: EMAS, UNGC, UNGP, OCDE, ISO 26000, ILO Declaration 또는 GRI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
- 다양성 진술서(Diversity statement)
- 감사인 검증: 문서의 존재 여부(Presence of statement)
- 벌금: 명시되지 않음

네덜란드

(Decree Disclosur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PbEU,
2014, L330 and Decree Disclosure Diversity Policy PbEU,
2014, L330)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 공익실체
 - 상장 기업(Listed companies)
 - 중앙 금융기관(Central credit Institutions)
 - 보험 회사(Insurance undertakings)
 - 은행

(2) 보고 특징

-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연차경영보고서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 가능(may rely upon)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
- 다양성 진술서(Diversity statement): 대형 상장 주식회사에 적용
- 감사인 검증: 진술의 존재 여부 및 공시의 일관성 확인 및 중요한 왜곡 표시의 식별은 경영 보고서 검토의 일부가 되어야 함
- 벌금: 명시되지 않음

영 국

(The Companies, Partnerships and Groups (Accounts and Non-financial Reporting) Regulation No. 1245)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공익실체
 - 상장 기업(Listed companies)
 -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
 - 보험 회사(Insurance undertakings)

(2) 보고 특징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전략 보고서(The strategic report)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 가능(may rely upon)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
- 다양성 진술서(Diversity statement): 대형 상장 주식회사에 적용
- 감사인 검증: 경영 보고서 검토의 일환으로 문서의 존재(presence of statement) 및 공개의 일관성 확인 필요함
- 벌금: 사안별로 결정하여 책임자에게 부과

스웨덴

(Corporate Reporting on Sustainability and Diversity Policy CU2)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250명 이상
- 순 매출 3억 5천만 스웨덴 크로나(SEK) 또는 자산총액 1억 7천5백만 스웨덴 크로나 이상
- 보고의무를 갖게 되는 적용대상 기업은 매출액, 자산 또는 직원 수에 관한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회사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공익실체(PIE)에 국한되지 않음

(2) 보고 특징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 재무제표 내용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표시된 금액에 대한 설명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연차보고서 또는
- 연차보고서와 함께 발행되는 별도 보고서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
- 다양성 진술서 (Diversity statement)
- 감사인 검증: 문서의 존재 여부(Presence of statement)
- 벌금: 「연차보고서법(Annual Report Law)」적용

덴마크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L 117)

(1) 적용대상 기업

- 지침에 정의된 대규모 기업
- 회계 등급 D(accounting class D)의 기업:
 - 상장 기업(Listed companies)
 - 국유 유한책임회사(State-limited liability companies)
- 500인 이상의 신용 회사 및 보험 회사
- 근로자 수 500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도 인권, 기후 문제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 존재. 2018년부터 모든 대기업(등급 C 및 D)은 모든 문제에 대해 보고 의무 존재

(2) 보고 특징

-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연차보고서 또는 경영보고서
- 별도 보고서를 기업 홈페이지에 5년간 공지 및 해당 사항 경영보고서에 언급되어야 함
- 공익기업(public interest companies)은 4개월, 기타 기업은 5개월 이내에 연간 또는 경영보고서에 발행 되어야 함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 가능(may rely upon) - 자동 준수(auto-compliance)를 위한 UNGC COP, PRI 또는 GRI 프레임워크 참조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적용되지 않음
- 다양성 진술서 (Diversity statement): 비재무 정보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
- 감사인 검증: 경영 보고서 검토의 일환으로 진술의 존재 및 공개의 일관성 확인 필요함
- 규제 검토: 매년 전체 범위의 이행을 위해 상장 기업의 10-20%를 선택하여 문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함. 이행 접근 방식(the enforcement approach)은 중요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벌금: 덴마크 재무제표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법원은 덴마크 재무제표법 제161조, 162조 및 164조에 따라 벌금의 크기를 결정함

아 일 랜 드

(European Union Regulations 2017)



(1) 적용대상 기업

- 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 비적격기업(Ineligible Entities)(공익실체)
 - 상장 기업 (Listed companies)
 -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s)
 - 보험 회사(Insurance undertakings)

(2) 보고 특징

1) 보고 이슈 사항

- 환경관련 사항
- 사회 및 노동자 관련 사항
- 인권관련 사항
- 반부패 및 뇌물 관련 사항

2) 의무 보고 사항

- 사업 모델
- 비재무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 비재무 사항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주요 리스크
- 사용된 모든 비재무 핵심성과지표(KPI)
- 재무제표 내용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표시된 금액에 대한 설명

3) 보고 형식 및 기간

- 이사보고서(The director's report) 또는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별도의 보고서 발간(이사보고서 기재사항 포함)

4) 보고 기준

- 국제, EU, 또는 국내의 보고 프레임워크

(3) 기타 사항

-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and explain principle) : 보고사항 중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
- Safe harbour 원칙: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
- 다양성 진술서 (Diversity statement):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주식 이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대형 상장 회사(large traded companies) 제외
- 감사인 검증: 문서의 존재 여부(Presence of statement)
- 벌금: 준수하지 않을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책임자는 약식 유죄 판결 시 A급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사회적 가치 법제 21-19-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I)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2021년 7월 28일 인쇄
2021년 7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계홍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9,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9-11-91865-05-9 93360



최 유 경(공동책임)

학 력

UC Berkeley Law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사법(司法)의 책무성
(責務性)

-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회적가치 요소로서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II
-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 I
- 웹 스크래핑(Wed Scrapping) 기법을 통한
현행법상 사회적 가치 동향 분석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
-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



정 아 름(공동책임)

학 력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학 전공)
(현) 사회적가치연구원 V-lab 측정연구팀장

연구실적 및 논문

-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의 특징 분석 및 최신 동향
-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사회적 가치 보고를 위한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공시방안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SE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9 791191 865059
ISBN 979-11-91865-05-9

값 9,000원